발 간 등 록 번 호
11-1480592-001519-01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⑨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⑨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본 자료는 2019년 6월 30일 기준 국내 이용자가 인도에서 생물자원 접근 신청 시 참고용으로 발간되었으며,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 신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인도의 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목차

1장 인도 동향

1 생물다양성 및 ABS 정책 현황 8
2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현황 9
3 주요 용어정의 11

2장 생물자원 접근절차 개요

1 생물자원 접근절차 승인대상 16
2 생물자원 접근절차 20

3장 생물자원 접근 신청방법

1 온라인 등록절차 26
2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절차 29
3 연구결과 이전 신청절차 36
4 지식재산권 취득 43
5 제3자 이전 49
6 이익공유협약 체결과 이익공유 비율 54
7 승인 소요기간 65
8 공통사항 66

4장 생물자원 접근신청 이후의 절차

1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신청 이후 절차 70
2 국내 이행준수 절차 73

부록

부록 1: 인도 생물자원 접근 온라인 신청 메뉴얼(영문) 78
부록 2: 접근 제한/금지 생물자원 95
부록 3: 승인 면제 생물자원 96
부록 4: 보전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 97

약어표

◆ 인도 법률 용어

- 법: 2002년 생물다양성법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 규범: 2004년 생물다양성규범 (Biological Diversity Rule, 2004)
- ABS지침: 2014년 생물자원및관련지식의접근과이익공유규칙에대한지침(Guidelines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and Benefits Sharing Regulations, 2014)
  * 인도는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인 ABS지침을 2014년 제정
- NBA: 생물다양성총국(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 SBBs: 주(州)생물다양성이사회 (State Biodiversity Boards)
- BMCs: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 R&D: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 IPR: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LC: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 이익공유협약: Benefit Sharing Agreement
  * 생물자원 접근 신청자와 생물다양성총국(NBA) 간 체결되는 계약으로, "agreement"는 계약을 의미하나 본 안내서는 협약으로 칭함

※ 참고

NBA와 신청자 간 체결되는 이익공유 계약에 대한 용어가 생물다양성법, 생물다양성규범 및 ABS지침에서 다르게 명시하고 있으나 동일한 의미

- 생물다양성법: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 생물다양성규범: 서면협약(a written agreement)
- ABS지침: 이익공유협약(benefit sharing agreement)

◆ 나고야의정서 관련 용어

- CBD: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diversity)
-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BD)
- 유전자원법: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내 이행법률
- ABS: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 ABS는 통상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의미
- PIC: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 나고야의정서 6조와 7조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자는 제공국의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 제공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MAT: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 나고야의정서 5조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자는 그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자)와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분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이익은 이용자와 제공국 간 체결되는 상호합의조건에 명시되어야 함

발간사

2014년 10월 발효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로 어느 국가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자원을 제공한 국가와 이용한 국가가 그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각 국은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방법을 규정하고 이익을 서로 나누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현재 119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고 해외 유전자원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연구소 등은 해당 국가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적 규정을 준수하면서 유전자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관련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도 국가마다 서로 달라, 학계와 업계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정부의 발빠른 국가별 정보공유 요청이 있어왔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함께 “나고야의정서 이행 해외 유전자원 접근 모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별 실무 안내서로는 처음으로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고유종의 비율이 높은 생물자원 부국 중 하나입니다. 이미 2002년에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정하는 생물다양성법을 제정하였으며, 의정서 당사국 중 제일 많은 220여 개의 생물자원 접근 승인 사례를 국제적으로 공개하는 등 나고야의정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인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국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전에 인도 정부로부터 반드시 접근을 승인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이용자가 인도 정부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인도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업계가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인도의 관련 법률, 인도에 납부해야 하는 이익공유의 비율, 접근 금지 및 승인 면제 생물자원 등과 함께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접근 신청 절차의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제도 운영 경험이 풍부한 인도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안내서가 인도 및 다른 생물자원 부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 바이오업계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장

배연재

I

인도 동향

1. 생물다양성 및 ABS 정책 현황 8
2.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현황 9
3. 주요 용어정의 11

1장 인도 동향

1절 생물다양성 및 ABS 정책 현황

◆ 인도는 91,200종의 동물과 45,500종의 식물이 10개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는 나라로서, 조류 69종(세계 10위), 파충류 156종(세계 5위), 양서류 110종(세계 7위)이 고유종으로 그 비율이 높은 편

◆ 인도는 이러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하여 생물다양성법(2002), 생물다양성규범(2004) 및 생물자원및관련지식의접근과이익공유규칙에대한지침(2014)을 제정하는 등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생물다양성행동계획(2008)을 수립하여 정책적 체계를 마련하는 등 ABS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

* 일반적으로 ABS는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를 의미하나, 인도 법률은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어, 본 안내서는 인도 법률에 따라 ABS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를 ABS로 표시함

◆ 인도의 ABS 체계는 생물/유전자원 부국의 모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는 국내 이겁들이 향후 생물/유전자원부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정책을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2절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현황

1.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

◆ 인도는 ABS 관련 법률로 생물다양성법, 생물다양성규범 및 생물자원및관련지식의접근과이익공유규칙에 대한지침 등을 운영 중

구분	관련 법령	발효일자
1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2003. 2. 5
2	생물다양성규범(Biological Diversity Rule, 2004)	2004. 4. 15
3	생물자원및관련지식의접근과이익공유규칙에대한지침(Guidelines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and Benefits Sharing Regulations, 2014)*	2014. 11. 21

- 생물다양성법은 생물자원 접근에 대한 규칙, 생물다양성총국(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과 주(州)생물다양성이사회(State Biodiversity Boards, SBBs)[1]의 기능 등을 규정
- 생물다양성규범은 NBA 구성,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세부사항, 생물자원 접근절차, 접근승인 철회, 접근제한, 연구결과 이전 승인절차, 지식재산권 승인절차, 제3자 이전 승인절차, 이익공유 기준 및 신청서식 등을 규정
- 생물자원및관련지식의접근과이익공유규칙에대한지침(이하 'ABS지침')은 생물다양성법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규칙이자 국제협약인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이행법률로서, 생물자원에 대한 목적별 접근 절차 및 이익공유 방법과 비율 등을 상세히 규정

⋯› 상기 인도의 ABS 관련 법률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 자료실에서 참조

※ 참고: 2019년 ABS지침 개정안

> 현재 ABS지침의 2019년 개정안(Draft(revised) guidelines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and Benefits Sharing Regulations, 2019)이 제안되어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2], 본 안내서는 현재 운용중인 2014년 ABS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됨

◆ 인도 ABS 법률은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보다 적용 범위가 넓음

◆ 인도 ABS 법률에 따라, 동 안내서는 생물자원과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대상 범위로 하여 작성됨

1) 주(州)생물다양성이사회는 인도의 주(州)별로 명칭이 주어진다(법 22(1)절)
2) The Times of India,"NBA invites suggestions for benefits sharing guidelines", 2019 .4. 30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chennai/nba-invites-suggestions-for-benefits-sharing-guidelines/articleshow/69109726.cms, 2019.5.21.일 방문)

2.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담당기관

◆ 인도의 ABS 담당기관과 그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담당기관	역할과 기능
환경산림기후변화부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s and Climate Change)	• 나고야의정서 국가연락기관 * 국가연락기관은, 나고야의정서 13.1조에 따라,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에 대한 사전통고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임무 수행
생물다양성총국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 * 국가책임기관은, 나고야의정서 13.2조에 따라,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 승인 및 MAT 체결 임무 담당 • NBA는 중앙정부가 지정한 법인으로서, 중앙정부가 지정한 의장 1인, 중앙정부 대표 10인 및 생물다양성 전문가 5인으로 구성(법 8절) • 외국인의 생물자원 접근, 연구결과 이전, IPR 신청 승인(법 18(2절) 관련 규제 및 지침 마련(법 18(1)절) • 인도의 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대한 해외 IPR 승인을 반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법 18(4)절)
주(州)생물다양성이사회 (State Biodiversity Boards)	• 명칭: [주 이름]생물다양성이사회(법 22(1)절) • SBB는 중앙정부가 각 주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의장 1인, 주정부 대표 5인, 전문가 5인으로 구성(법 22절) •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에 대해 주정부에 자문 제공(법 23(a)절) • 내국인의 생물자원 상업적 이용 또는 생물조사/생물 이용 승인 (법 23(b)절)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문서화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역기구가 관할지역 내 BMC 구성(법 41(1)절) • 국민생물다양성등록소 준비(지역 생물자원/전통지식 정보 보관, 전자 데이터베이스 형식)(규범 22(6)조) • NBA/SBB가 BMC 관할 지역의 생물자원 또는 전통 지식 이용에 대해 승인 결정 시, BMC가 자문 제공 (법 41(2)절, 규범 22(7)조) • BMC 관할 지역의 생물자원을 상업적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집하는 자에게 요금 부과 가능(법 41(3)절)
전문가위원회 (Expert Committee)	• NBA가 구성하며, NBA는 EC와 협의하여 인도 생물 자원 접근신청에 대해 승인 여부 결정(법 19(3)절, 20(3)절, 규범 11(1)조)

3절 주요 용어정의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절차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용어는 생물다양성법 2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이러한 용어는 생물자원과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접근에 대한 온라인 신청절차에도 적용

* 인도는 2017년 3월부터 생물자원 접근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ABS e-filing (http://absefiling.nic.in)을 개시

◆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모든 원천의 살아있는 유기체 사이의 변동성과 유기체들이 일부로 속하는 생태적인 복잡성을 의미하며, 종 내, 종 간,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 (법 2(b)절)**

◆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용도나 가치가 있는 식물, 동물, 및 미생물 또는 그 구성요소 일부, 그 유전적 물질과 부산물(부가가치상품* 제외)을 의미하며, 인간의 유전물질은 제외 (법 2(c)절)**

* 부가가치상품: 생물자원을 사용한 부가가치상품을 의미[3)]

◆ **접근(access): 생물다양성법, 생물다양성규범 및 ABS지침에서 접근에 대한 정의는 부재하나, 접근 신청서 상에 접근 근원지로서 야생, 배양, 시장, 무역상, 기탁소, 기관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 인도에서 생물자원/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은 야생에서 존재하는 자원의 취득, 배양/기탁소를 통해 취득하는 자원, 시장이나 거래업자를 통해 취득하는 자원 등 포괄적 의미의 획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이러한 자원은 실물뿐만 아니라 표본 획득도 포함하며, 전통지식과 관련된 정보 수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 **연구(research): 생물자원 또는 기술적인 응용의 연구 또는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 기술적인 응용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는 상품(products) 또는 공정법(processes)을 만들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생물시스템(biological system), 생물체(living organism) 또는 파생물(derivative)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 (법 2(m)절)**

◆ **생물조사(bio-survey) 및 생물이용(bio-utilization): 종, 아종, 유전자, 생물자원의 구성요소 및 추출물에 대한 모든 목적을 위한 조사 및 수집을 의미하며, 특성화, 목록화, 생물분석을 포함 (법 2(d)절)**

◆ **상업적 이용(commercial utilization): 산업 효소, 식품 조미료, 향수, 화장품, 유화제, 올레오레진(oleoresins), 색소, 추출물 및 유전자(유전자 주입을 통해 농작물 및 가축물을 개량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전자) 등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서 생물자원의 최종용도(end use)를 의미하며, 농업, 원예, 가금류, 낙농업, 축산 또는 양봉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사육 또는 전통적 관행은 제외 (법 2(f)절)**

3)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Understanding the Biological Diversity Act: Explanatory Notes on Certain Sections of 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http://www.nbaindia.nic.in/content/565/56/1/explanatorynote.html, 2019.5.30.일 방문)

◆ 제공자(provider): 제공자에 대한 정의는 부재하나, 생물다양성법, 생물 다양성규범 및 ABS지침 규정을 고려했을 때, 생물자원/전통지식 제공자는 인도 내 생물자원/전통지식을 보유한 개인, 기관, 토착지역공동체(ILC) 또는 인도 정부로 해석됨

◆ 이용자(user/applicant): 생물다양성법, 생물다양성규범 및 ABS지침에서 이용자에 대한 정의는 부재하나, 생물자원/전통지식 이용자는 접근에 대한 사전승인 대상자, 즉, 내국인(인도 시민권자, 인도 법인/조합/기관)과 외국인(외국인, 재외동포 인도인, 외국 법인/조합/기관, 외국 자본이나 경영이 참여한 인도 법인/조합/기관)으로 해석됨

◆ 이익청구인(benefit claimers): 생물자원과 그 부산물의 보존자, 생물자원의 이용, 혁신 및 이러한 사용과 적용에 대한 관행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의 창안자 및 보유자 (법 2(a)절)

◆ 지역기구(local bodies): 헌법 243(B)(1)조 및 243Q(1)조 상의 판차야드(Panchayats, 인도 부락이사회(5인 회의)) 및 지자체(Municipalities)를 의미하며, 이러한 판차야트와 지자체가 없는 경우 헌법이나 중앙법 또는 주법 상의 지자체 기관을 의미 (법 2(h)절)

◆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fair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법 21절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총국이 결정한 이익의 공유 (법 2(g)절)

◆ 부가가치상품(value added products): 식별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형태의 식물/동물의 일부 또는 추출물을 포함한 상품 (법 2(p)절)

◆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 having high economic value): ABS지침은 생물자원 접근과 제3자 이전 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이익공유협약에 선급금을 포함하도록 규정(ABS지침 1(2)조, 3(3)조, 및 12(3)조)

* 2014년 ABS지침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이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2019년 개정안은 「부속서 I」에서 '보전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 목록'(List of biological resources having high conservation and economic value)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안내서 「부록 4」 참조)

II

생물자원 접근절차 개요

1. 생물자원 접근절차 승인대상 16
2. 생물자원 접근절차 20

2장 생물자원 접근절차 개요

인도는 인도 영역 내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취득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전승인과 이익공유의 대상 활동과 대상자 및 접근절차는 다음과 같음

1절 생물자원 접근절차 승인대상

1. 사전승인 대상 활동

◆ **인도 내 생물자원/전통지식에 접근하는 경우, 생물다양성총국(NBA)의 사전승인을 획득해야 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

* 사전승인(prior approval)은 생물자원에 접근 및 획득하기 이전에 NBA로 신청하여 승인 받는 것을 의미[4)]

1.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획득):** 외국인이 인도에서 발생한 생물자원/전통지식을 연구, 상업적 이용, 또는 (연구 또는 상업적 목적) 생물조사/생물이용 목적으로 획득 (법 3(1)절)
   * 내국인은 상업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주생물다양성이사회(SBB)로 사전통보
2. **연구결과 이전:** 내외국인이 인도에서 발생 또는 획득한 생물자원의 연구결과를 금전적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이전 (법 4절, 규범 17(1)조)
   - 세미나 또는 워크샵에서 연구논문 발표 또는 지식전파는 이전(transfer)에 해당하지 않음(법 4절 설명조항)
3. **지식재산권 신청:** 내외국인이 인도에서 획득한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 또는 정보에 기초한 신기술에 대해 인도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 신청 (법 6(1)절, 규범 18(1)조)
   -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특허당국의 특허승인 이후 그러나 특허 검인 이전에 NBA 허가를 받을 수 있음 (법 6(1)절 단서조항)
   - 식물품종 보호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IPR를 신청하는 자는 NBA 사전승인이 면제됨(법 6(3)절)

   * ABS지침은 관련 법률로 식물품종및농민권리보호법(Protection of Plant Variety and Farmers Right Act, 2001)을 명시(ABS지침 8(1)조)

4)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Understanding the Biological Diversity Act: Explanatory Notes on Certain Sections of 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http://ww.nbaindia.nic.in/content/565/56/1/explanatory note.html, 2019.5.30.일 방문)

4. **제3자 이전:** 위 1~3가지 사유로 승인받은 이후 생물자원/전통지식을 연구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transfer to a third party) (법 20(1)절, ABS지침 11조)
   -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 연구결과 이전, 지식재산권 신청에 대한 NBA의 사전승인을 획득한 이후에 생물자원/전통지식의 제3자 이전 가능하며, 별도로 제3자 이전을 신청 하여 승인 필요(20(2)절)

◆ **이러한 4가지 접근에 대한 사전승인 대상 활동은 이익공유 대상 활동에 해당(규범 20(4)조)**

2. 사전승인 대상자

◆ **인도 내 생물자원 접근의 사전승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법 3(2)절)**

1. **내국인:** (1) 인도 시민권자(개인), (2) 인도에 등록된 법인/조합/기관
2. **외국인:** (1) 외국인(개인), (2) 재외동포 인도인(소득세법 2절30항(Income-tax Act, 1961)) (개인), (3) 외국에서 등록된 법인/조합/기관, (4) 외국인 자본이나 경영이 참여한 인도에 설립 또는 등록된 법인/조합/기관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 사전승인 대상활동/대상자/신청서식>

대상활동	대상자	서식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	외국인 (연구/상업적 목적)	Form I
연구결과 이전	외국인·내국인	Form II
지식재산권 신청	외국인·내국인	Form III
제3자 이전	외국인	Form IV

3. 사전승인 예외 활동

◆ NBA의 사전승인이 요구되지 않는 활동은 다음과 같음:

사전승인 예외 활동
인도 시민권자 또는 단체의 연구목적으로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ABS지침 17조)
생물자원 또는 관련 정보의 이전 또는 교환을 포함한 공동연구프로젝드(법 5(1)절, ABS지침 17조)
지역민, 지역공동체 및 토착 의술 종사자(ABS지침 17조) * IPR 획득은 제외
인도에서 농업, 원예, 가금, 낙농업, 축산 또는 양봉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사육 또는 전통적인 관행을 목적으로 생물자원 접근(ABS지침 17조)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서 연구논문 발표 또는 지식 전파(법 4절, ABS지침 17조)
식별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형태의 식물/동물의 일부 또는 추출물을 포함한 상품인 부가가치상품에 대한 접근(ABS지침 17조)
법 40절에 따라 중앙정부가 공지한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생물 자원(ABS지침 17조) ⋯› 안내서 「부록 3」 참조
식물품종및농민권리보호법(Protection of Plant Variety and Farmers Right Act, 2001) 상의 지식재산권 신청(법 6(3)절, ABS지침 8(1)조)
생물다양성법 발효 이전에 획득한 생물자원을 이용한 특허 출원

◆ **공동연구 프로젝트**

- 인도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생물자원이나 생물정보의 이전 또는 교환)는 NBA의 사전 승인 의무가 없음(법 5(1)절)
  - (1) 이러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중앙정부의 정책지침에 일치해야 하고, (2) 이러한 지침에 따라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3) 승인 사본을 관련 세부사항과 함께 NBA로 제출(법 5(3)절)
- 이러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제외한 생물다양성법 발효 이전에 계약 체결된 모든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생물다양성법 또는 중앙정부 정책지침에 합치하지 않는(위반되는) 부분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음(법 5(2)절)

◆ **부가가치상품**

- 인도 생물다양성법 2(c)절은 생물자원에서 부가가치상품(value added product)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2(p)절에 따르면 이러한 부가가치상품은 식별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형태의 식물이나 동물의 일부 또는 추출물이라고 정의)
-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특정 동·식물을 취득 시에는 ABS절차가 적용되어 사전승인이 필요하나, 이러한 동·식물의 부가가치상품(예, 오일) 취득 시에는 ABS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사전승인이 필요 없으므로 부가가치 상품의 정의와 범위가 중요

  * 부가가치상품의 예시: 오일(oil), 올레오레진(oleoresins), 정제된 식물화학화합물(purified phyto-compunds)

• 그러나 인도 정부는 부가가치상품에 대한 ABS 절차 적용 여부를 부가 가치상품의 형태가 아닌 용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식물/동물의 부분이나 추출물을 취득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신청 시 NBA로부터 사전에 승인대상 생물자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 참고: 부가가치상품 관련 분쟁 사례[5)]

> 2015년 피마자유(castor oil)가 부가가치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었으며, 인도 법원은 "피마자유가 일반적인 상품으로 사용되면 ABS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나, 피마자유가 약품이나 화장품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ABS 절차가 적용된다"고 판결 내림

◆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생물자원

• 인도 정부가 공표한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 normally traded as commodities)은 NBA의 사전승인 면제대상이나, 이러한 상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생물 다양성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6)]

* 인도 정부는 2016년 4월 7일과 2017년 11월 7일 두차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으로 421개 생물자원 목록을 공표 (⋯› 안내서 「부록 3」 참조)

◆ 생물다양성법 발효 이전의 특허 출원

• 생물다양성법(2002)과 생물다양성규범(2004) 발효 이전에 인도에서 획득한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인도 내외에서 특허 출원한 경우는 생물자원 접근의 사전승인 대상에서 예외에 해당[7)]

5) LECOLOGY, "Uncertainty remains over scope of value added products and biological resources", 2017.4.26.(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cd26abb3-9eac-4d8a-bd2a-fe8a5ce3f6b7, 2019.5.24. 방문)
6) NBA 사무국 T. Rabikumar의 이메일 답변, 2018. 10. 10.
7) NBA ABS e-filing, FAQ. http://absefiling.nic.in/NBA/register/faq?aboutNBAId=53, 2019.2.1. 방문

4. 접근 금지/제한 생물자원

◆ **인도 중앙정부는 생물다양성법 38절에 따라 주정부와 협의하여, 주별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공표할 수 있음**

- 법 38절에 따라,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는 인도 16개 주와 2개 직할령의 멸종위기 동식물 목록을 공표함 (⋯› 안내서 「부록 2」 참조)
  * 16개 주: Bihar, Goa, Himachal Pradesh, Karnataka, Kerala, Madhya Pradesh, Manipur, Meghalaya, Mizoram, Orissa, Punjab, Tamil Nadu, Tripura, Uttar, Pradesh, Uttarakhand, West Bengal
  * 2개 직할령: Andaman & Nicobar, Diu & Daman
- 이러한 지역별 멸종위기종은 접근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각 주별 생물다양성이사회 (SBB)가 승인하는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접근 가능
  - 예외사항: (1) 과학적 연구, (2) 과학적/학문적 기관의 식물표본실이나 박물관, (3) 번식, 및 (4) 기타 과학적 조사

◆ **이외에 생물다양성규범 16조는 접근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6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1) 멸종위기종, (2) 고유종과 희귀종, (3) 접근으로 지역민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우, (4) 접근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제와 경감이 어려운 경우, (5) 접근이 유전적 침식(genetic erosion)을 발생하거나 생태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및 (6) 국가이익 및 국제협약의 목적에 반하여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2절 생물자원 접근절차

인도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생물자원 접근의 승인절차를 다르게 운용 중

1. 내국인의 생물자원 접근절차

◆ **인도 내국인(시민권자 또는 인도 법인/조합/기구)이 상업적 목적(상업적 이용, 상업적 목적의 생물조사/생물이용)으로 유전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관할 주(州)생물다양성이사회(SBBs)에 사전에 통보(prior intimation)해야 할 의무가 있음(법 7절, 24(1)절)**

- 이러한 사전통고 의무는 재배자와 경작자, 및 토착 의술을 관행적으로 수행한 의사(vaids and hakims) 등 지역민과 지역공동체에는 적용되지 않음(법 7절 단서조항)
- SBBs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에 대하여 주정부에게 자문을 제공하고(법 23(a)절), 인도 내국인의 상업적 목적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을 승인하는 임무를 수행(법 23(b)절)

◆ SBBs는 신청자의 사전통보를 수령하면, 지역기구 즉,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 BMC)와 협의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에 반하는 경우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법 24(2)절)

◆ 내국인이 사전통보 서식에 작성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공개되지 않음(법 24(3)절)

2. 외국인의 생물자원 접근절차

◆ 외국인이 인도의 생물자원 또는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총국 (NBA)의 사전승인(prior approval)을 취득할 의무가 있으며, NBA은 생물자원 이용으로 발생 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조건으로 접근을 승인함

◆ 인도에서 외국인의 생물자원/전통지식에 접근하기 위한 신청 및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음:

- 인도의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 연구결과 이전, 지시재산권 신청 및 제3자 이전에 대하여, 신청자(이용자)는 NBA로 신청
- NBA는 주(州)SBBs를 통해 지역별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MCs)와 협의하여 의견 수렴 (규범 14(3)조)
- NBA는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와 협의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명령(order)으로 공표(public notice) (법 19(3)~(4)절, 20(3)~(4)절)
- NBA가 승인 시, NBA는 신청자와 이익공유협약(benefit sharing agreement)을 체결(ABS지침 1(2)조, 2(2)조, 6(2)조, 8(2)조, 11(2)조)
  - 생물자원, 그 부산물, 신기술, 관행 및 전통지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신청자, 지역기구(BMC)와 이익청구자 간에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라 공평하게 이익공유(법 21(1)절)

<이익공유 방식(법 21(2)절)>

1. NBA와 지식재산권(IPR) 공동소유권 인정(이익청구자가 확인되는 경우, 이익청구자와 공동소유)
2. 기술이전
3. 생산과 연구개발(R&D) 소재지의 이익청구자 생활수준을 향상
4. 생물자원, 생물조사 및 생물이용에 대한 R&D에서 인도 과학자, 이익청구자 및 지역민과 연합
5. 이익청구인을 지원하기 위한 벤처투자조합 설립
6. NBA가 정한 이익청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및 기타 비금전적 이익 지불

• NBA가 불승인 시: 불승인 사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알리고, 신청자에게 청취 기회 부여(법 19(3)절, 20(3)절, 규범 14(8)~(9)조)

◆ **이익공유 대상자: 생물다양성총국(NBA)**

• 인도 생물자원/전통지식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이익공유 대상자 및 이익공유협약 체결 대상자는 NBA

* NBA는 이익공유 금액을 국가생물다양성기금(National Biodiversity Fund)에 기탁. 다만,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나 기구가 생물자원/전통지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NBA는 MAT에 따라 이익공유 금액을 이러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지불(법 21(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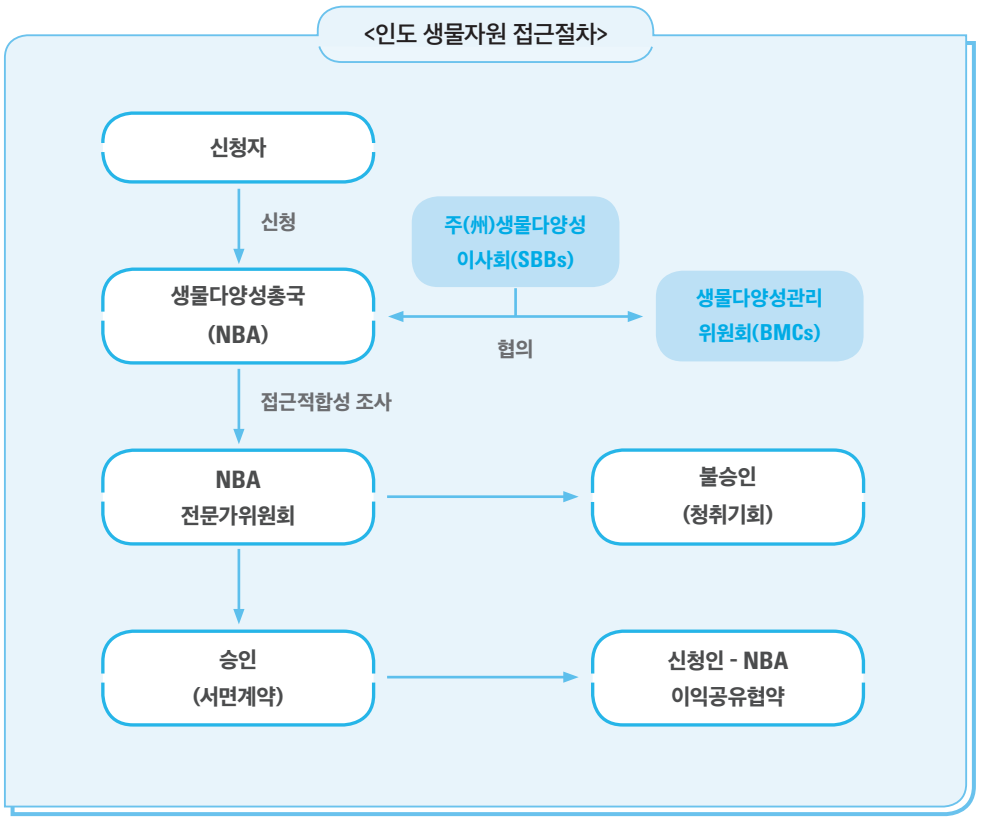

III

생물자원 접근 신청방법

1. 온라인 등록절차 26
2.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절차 29
3. 연구결과 이전 신청절차 36
4. 지식재산권 취득 43
5. 제3자 이전 49
6. 이익공유협약 체결과 이익공유 비율 54
7. 승인 소요기간 65
8. 공통사항 66

3장 생물자원 접근 신청방법

◆ **인도는 2017년 3월 30일부터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ABS e-filing을 개시[8)]**

- 인도의 생물자원/전통지식에 접근하려는 자는 ABS e-filing에서 온라인 등록 이후 생물자원 이용 목적별로 온라인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NBA는 온라인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 ABS e-filing의 영문 메뉴얼은 부록 1 참조

◆ **본 안내서는 국내 이용자가 인도에서 생물자원/전통지식에 접근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서이므로, 이하에서는 외국인이 인도의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 신청할 때 온라인 등록절차 및 이용 목적별 접근 신청절차를 안내**

1절 온라인 등록절차

ABS e-filing을 통해 생물자원 접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함

◆ **온라인 신청: NBA ABS e-filing 홈페이지**

- http://absefiling.nic.in/NBA/login/auth 접속

◆ **등록절차**

- http://absefiling.nic.in/NBA/login/auth 접속
- “New Registration” 클릭
- 신청자 프로필(applicant’s profile) 페이지 작성
  - 성명,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생일, 전화번호
    * 로그인: (아이디, username) 4-20개 단어, (비밀번호) 최소 7-최대 16자(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포함 필수)
    * 전화번호: 숫자만 기입
- 신청자 이메일로 확인-이메일 수신

8)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ABS e-filing (http://absefiling.nic.in/NBA/login/auth, 2019.3.20.일 방문)

<확인 이메일 예시>

제목: New Account

Hi “Username”

You (or someone pretending to be you) created an account with this email address.

If you made the request, please click here to finish the registration.

- 이메일로 수신된 링크(위 이메일에서 ‘here’로 표시된 부분)를 클릭하여, ABS e-filing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로그인 이후, “Apply Online”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 접근 목적별 신청서식, 승인 대상자 및 수수료 등

목적		신청서식	NBA 승인 대상자	신청 수수료	소요기간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	연구, 상업적 이용, (연구 또는 상업적 목적) 생물조사/생물이용	Form I	• 외국인 개인 • 재외 동포 인도인 • 외국 법인/조합/기관 • 외국 자본/경영이 참여한 인도 법인/조합/기관	10,000루피 (168,800원)	6개월
연구결과 이전	인도 내 존재하거나 인도에서 획득한 생물자원의 연구결과를 금전적 사유로 이전	Form II	• 외국인 개인 • 재외 동포 인도인 • 외국 법인/조합/기관 • 외국 자본/경영이 참여한 인도 법인/조합/기관	5,000루피 (84,400원)	3개월
지식재산권 신청	생물자원 연구 또는 정보를 이용한 지식재산권을 인도 국내외에서 신청	Form III	• 외국인 개인 • 재외 동포 인도인 • 외국 법인/조합/기관 • 외국 자본/경영이 참여한 인도 법인/조합/기관	500루피 (8,440원)	3개월
제3자 이전	Form I을 통해 접근 승인된 생물자원/전통지식의 제3자 이전	Form IV	• 외국인 개인 • 재외 동포 인도인 • 외국 법인/조합/기관 • 외국 자본/경영이 참여한 인도 법인/조합/기관	10,000루피 (168,800원)	6개월

* 1 루피(rupee)=16.88원 (2019.5.16.일 기준)

◆ **이익공유(이익공유협약 체결) 대상자: 생물다양성총국(NBA)**

◆ **이용 목적별 승인 신청 순서**

- 연구결과 이전, 지식재산권, 제3자 이전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먼저 생물자원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 생물자원 접근(Form-I) 승인 ⇒ 연구결과 이전 신청(Form-II)
  - * 생물자원 접근(Form-I) 승인 ⇒ 지식재산권 신청(Form-III)
  - * 생물자원 접근(Form-I) 승인 ⇒ 제3자 이전 신청(Form-IV)
- 특히, 제3자 이전 신청의 경우에는 연구결과 이전과 지식재산권 신청에 대한 사전승인 획득 이후 제3자 이전이 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함
  - * 생물자원 접근(Form-I) 승인 ⇒ 연구결과 이전(Form-II) 승인 ⇒ 제3자 이전 신청(Form-IV)
  - * 생물자원 접근(Form-I) 승인 ⇒ 지식재산권 신청(Form-III) 승인 ⇒ 제3자 이전 신청(Form-IV)
- 이용 목적별로 별도로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수수료도 별도로 납부해야 함

2절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절차

◆ **신청목적**

- 인도 내 생물자원/전통지식을 연구, 상업적 이용 또는 (연구 또는 상업적 목적) 생물조사와 생물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획득)(법 3(1)절)
- NBA는 승인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독(규범 15(10)조)

◆ **승인대상자: 외국인(법 3(2)절)**

- 외국인 개인
- 재외동포 인도인
- 외국 법인/조합/기구
- 외국 자본이나 경영이 참여하는 인도 법인/조합/기구

◆ **생물자원 접근 제한 또는 금지 사유(규범 16조)**

1) 멸종위기 분류군
2) 고유종과 희귀종
3) 접근이 지역민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우
4) 접근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제와 경감이 어려운 경우
5) 접근이 유전적 침식(genetic erosion)을 발생하거나 생태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6) 국가이익 및 국제협약의 목적에 반하여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 또는 승인 취소 사유(규범 15조)**

1) 승인받은 자가 생물다양성법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승인 받은 자가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3) 승인된 접근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4) 공공이익에 우선하거나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경우

1. 준비서류

- 개인: 신분증 사본, 여권사본, 승인서한 사본(대리신청 시)
- 법인/기관: 관련 증빙서류(등록증 등) 사본, 신청대리자 승인서한 사본
- 인도 내 연락처: 연락자 인도 신분증 사본(해당 시)
- 신청인 기관이 국내외에서 R&D 수행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상호양해각서(MOU) 사본
- 이익공유협약 사본(해당 시)

  * ABS e-filing에서는 이익공유협약을 이익공유약정서(arrangements for benefit sharing) 및 상호합의조건(MAT)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모두 동일한 의미임

- 신청자 전자서명서

※ 업로드 할 서류는 PDF 파일로 준비

2. 온라인 신청절차

◆ ABS e-filing 로그인

- ABS e-filing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 “Apply Online”을 클릭하여, 신청서 양식 선택: Form I 선택

◆ 신청서 작성순서

- Part 1 ⇨ Part 2 ⇨ Part 3 ⇨ Part 4 ⇨ Part 5 ⇨ 검토 ⇨ 수수료

1) Part 1: 개인 또는 기관 프로필 작성

- **개인인 경우**
  - 신청자 성명과 주소(신분증과 동일하게),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 신분증 사본, 여권 사본, 승인서한(대리인 신청) 사본 업로드

  * 승인서한(authorized letters): 승인받으려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는 승인서한 제출

  - 신청자 프로필 선택: 과학자, 학생, 연구자, 기타 중 선택

- **기관(법인 등)인 경우**
  - 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웹주소, 업종(연구, 제조, 사업, 무역, 기타) 입력, 기관 등록서류 사본 업로드
  - 대리인: 성명, 도착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입력, 대리 승인서한 사본 업로드

⋯› **저장하고 인도 내 연락처 입력**

- **인도 내 연락처 주소 (해당하는 경우)**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및 인도 신분증 사본 업로드

⋯› **저장하고 Part 2 이동**

2) Part 2: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세부사항

① 대상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세부사항

1. 접근대상: 생물자원, 전통지식, 모두 중 선택
2. 대상 생물자원: 식물, 동물, 미생물 중 선택
3. 일반명칭
4. 학명
5. 취득부위 (줄기, 씨앗, 과실, 뿌리, 잎, DNA, 기타 중 선택)
6. 취득물량
7. 취득기간
8. 전통지식 세부사항 (500자 이내)

⋯› **저장하고 취득지역 정보 입력**

② 취득지역 정보

1. 학명
2. 접근 근원지: 야생(wild), 배양(cultivated), 시장(market), 무역상(trader), 기탁소(repositories), 기관(institution), 기타(others) 중 선택

3-1. 야생, 배양 선택 시: 주소 입력(주(state), 지방(district), 도시(town), 마을(village))

3-2. 시장, 무역상, 기탁소, 기관 선택 시: 성명, 연락처 입력

⋯› **저장하고 Part 3 이동**

3) Part 3: 전통지식 및 접근목적

- **전통지식 세부사항: 구두(oral), 문서(document), 해당없음 중 선택**
  * 구두 또는 문서 선택 시, 500자 이내 설명

- **전통지식 해당 시: 공동체/개인의 지리적 위치**
  - 공동체/개인의 동의: 공동체, 개인, 해당없음 중 선택

⋯› 저장하고 다음 입력

- **신청자가 승인한 자의 성명 및 인원수**
  - 본인, 승인자, 기타 중 선택
  - 승인자 또는 기타 선택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력

⋯› 저장하고 다음 입력

- **접근목적**
  -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목적: 연구, 생물조사 및 생물이용, 상업적 이용 중 선택
  - 접근목적 간단히 설명(500자 이내)
  - 접근에 따른 생물다양성 위해 가능성 여부

⋯› 저장하고 Part 4 이동

4) Part 4: R&D 활동 및 이익공유

- **R&D 활동 정보**
  - R&D 활동 참여 여부 선택
  - R&D 활동 참여 시
  * R&D에 참여하는 기관 상호 및 상세 연락처
  * MoU 또는 동의서(letter of intent) 첨부

- **R&D 수행하는 최종기관 및 위치**
  - 기관명, 주소, 상세 연락처

-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접근으로 인한 신청자와 신청자 국가에 대한 경제적 및 기타 이익(IPR, 특허 포함) (500자 이내)**

-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접근으로 인한 신청자와 신청자 국가에 대한 생물학적, 과학적, 사회적 또는 기타 이익 (500자 이내)**

-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사용으로 인도/공동체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이익 (500자 이내)**

- **이익공유 방법 및 약정서**
  - 생물다양성법과 생물다양성규범에 따른 생물자원과 전통지식 제공자와의 이익공유(금전적/비금전적) 방법 및 약정서 존재 여부
  - 해당 시: 상호합의조건(신청자와 제공자 간 MAT) 사본 업로드

⋯› **저장하고 Part 5 이동**

5) Part 5: 선언서

- **서약방법: 전자서명 또는 비전자서명 선택**
  - 전자서명 선택: 전자서명서 업로드
  - 비전자서명 선택: 수수료 납부 완료 이후 접수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이후 NBA로 제출

  ※ 주의: 선택 후 수정 불가

⋯› 저장하고 서약서 이동

- **서약내용**
  - 생물자원 취득이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생물자원 취득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생물자원 취득이 생태계에 위해성 없음
  - 생물자원 취득이 지역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나는/우리는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는 사실이며, 사실이 아닌 경우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저장하고 검토(Preview) 또는 제출(Submit) 선택

- 검토 단계: 저장내용과 첨부서류 출력 가능

⋯› 제출 선택 시: 수수료 지불로 이동

- 확인창(Confirm message)에서 “OK” 클릭하여 수수료 납부화면으로 이동

6) 수수료 납부(online payment)

- **수수료 납부화면: 납부조회번호(payment reference number) 부여 및 수수료 납부 가능**
  * 온라인 납부만 가능
  * (Form I) 10,000루피, (Form II) 5,000루피, (Form III) 500루피, (Form IV) 10,000루피

- **수수료 납부: 인도국영은행(State Bank of India)에서 온라인 납부**
  - Pay online 클릭 ⇨ SBI Collect로 이동 ⇨ 거래참조번호(transaction reference number) 입력 ⇨ 영수증 발급 (pdf 저장 및 출력 가능)

- **수수료 납부 확인**
  - ABS E-filing에서 해당 신청절차를 선택하여, 수수료 납부절차에서 납부조회번호 입력 및 영수증 업로드

- **수수료 납부절차 완료 시, 신청번호(Application number)를 포함한 접수서 발급**
  * 주의: 비전자서명 선택 시, 접수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이후 원본을 NBA로 제출

3절 연구결과 이전 신청절차

◆ **대상자원: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Form I)에 대한 NBA 승인을 획득한 자원(ABS지침 6(1)(b)조)**

◆ **신청목적**

• 인도 내 존재하거나 인도에서 획득한 생물자원의 연구결과를 금전적 사유로 이전(법 4절, 규범 17(1)조)

※ 참고

- 연구논문을 세미나 또는 워크샵에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발표하는 것은 연구결과 이전에 포함되지 않음(법 4절 설명조항)

◆ **승인대상자: 외국인(법 3(2)절)**

• 외국인
  - 외국인
  - 재외동포 인도인
  - 외국 법인/조합/기관
  - 외국 자본이나 경영이 참여하는 인도 법인/조합/기관
• 내국인
  - 인도 시민권자
  - 인도 법인/조합/기관

1. 준비서류

• 개인: 신분증 사본, 여권사본, 승인서한 사본(대리신청 시)
• 법인/기관: 관련 증빙서류(등록증 등) 사본, 신청대리자 승인서한 사본
• 인도 내 연락처: 연락자 대리 승인서 사본, 인도 신분증 사본 (해당 시)
• NBA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 승인서 사본
• R&D 수행기관의 해당 당국이 신청자에게 발급한 신용장 사본
• 연구결과 이전 신청자와 수령인 간 상호합의조건(MAT) 또는 MOU 사본
• 신청자 전자서명서

※ 첨부(업로드)되는 증빙서류는 사본 PDF 파일로 준비

2. 온라인 신청절차

◆ ABS e-filing 로그인

- ABS e-filing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 “Apply Online”을 클릭하여, 신청서 양식 선택: Form II 선택

◆ 신청서 작성순서

- Part 1 ⇨ Part 2 ⇨ Part 3 ⇨ Part 4 ⇨ Part 5 ⇨ 검토 ⇨ 수수료

1) Part 1: 개인 또는 기관 프로필 작성

- **개인인 경우**
  - 신청자 성명과 주소(신분증과 동일하게),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 신분증 사본, 여권 사본, 승인서한(대리인 신청) 사본 업로드

  * 승인서한(authorized letters): 승인받으려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는 승인서한 제출
  - 신청자 프로필 선택: 과학자, 학생, 연구자, 기타 중 선택

- **기관(법인 등)인 경우**
  - 기관: 기관명, 기관유형(정부기관/기관/회사 중 선택), 지위(외국법인/인도법인(외국 지분 또는 경영 참여)/인도법인 중 선택),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웹주소, 업종(연구/ 제조/사업/무역/기타 중 선택) 입력, 기관 등록서류 사본 업로드
  - 대리인: 성명, 도착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입력, 대리 승인서한 사본 업로드

⋯› **저장하고 인도 내 연락처 입력**

- **인도 내 연락처 주소 (해당하는 경우)**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및 인도 신분증 사본 업로드

⋯› **저장하고 Part 2 이동**

2) Part 2: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세부사항

① 수행 연구 세부사항

1. 수행 연구 세부사항 요약(500단어 이내)
2. 이전 예정인 연구결과 유형(500단어 이내)

⋯› 저장하고 생물자원 정보 입력

② 연구에 사용된 대상 생물자원/전통지식 세부사항

1. 접근대상: 생물자원, 전통지식, 모두 중 선택
2. 대상 생물자원: 식물, 동물, 미생물 중 선택
3. 일반명칭
4. 학명
5. 생물자원 부위 (줄기, 씨앗, 과실, 뿌리, 잎, DNA, 기타 중 선택)

⋯› 저장하고 취득지역 정보 입력

③ 연구에 사용된 생물자원 취득지역 정보

1. 학명
2. 접근 근원지: 야생(wild), 배양(cultivated), 시장(market), 무역상(trader), 기탁소(repositories), 기관(institution), 기타(others) 중 선택
3. 주소 입력(주(state), 지방(district), 도시(town), 마을(village))

⋯› 저장하고 Part 3 이동

3) Part 3: 전통지식 및 접근목적

- **연구에 사용된 전통지식 세부사항 및 전통지식 보유 개인/공동체**
  - 구두, 문서, 해당없음 중 선택

  * 구두 또는 문서 선택 시, 500자 이내 설명

- **공동체/개인의 지리적 위치 (전통지식 해당 시)**
  - 공동체/개인의 동의: 공동체, 개인, 해당없음 중 선택
  - 공동체 또는 개인 선택시: 공동체/개인의 성명, 주소

⋯› **저장하고 다음 입력**

- **R&D 수행 기관 세부사항**
  - 기관명, 연락처 세부사항
  - R&D 수행기관의 해당 당국이 신청자에게 발급한 신용장 사본 업로드

⋯› **저장하고 Part 4 이동**

4) Part 4: R&D 활동 및 이익공유

- **연구결과 이전 예정인 개인/기구의 세부사항**
  - 성명/기관명 및 연락처(500 단어 이내)
  - 양수인의 연구결과 이용 목적 세부사항(500 단어 이내)

- **이전된 연구결과의 상업화로 인한 개인/기구의 경제적, 생물학적, 과학적 또는 기타 이익(500 단어 이내)**

- **연구결과 이전 승인을 통해 신청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생물학적, 과학적 또는 기타 이익 (500 단어 이내)**

- **연구결과 이전 승인 수령인과 신청자 간 협약 또는 MoU 세부사항**
  - 해당 시: 500자 단어 이내 작성, 상호합의조건 또는 MoU 사본 업로드

⋯› 저장하고 Part 5 이동

5) Part 5: 선언서

- **서약방법: 전자서명 또는 비전자서명 선택**
  - 전자서명 선택: 전자서명서 업로드
  - 비전자서명 선택: 수수료 납부 완료 이후 접수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이후 NBA로 제출

  ※ 주의: 선택 후 수정 불가

⋯› **저장하고 서약서 이동**

- **서약내용**
  - 나는/우리는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는 사실이며, 사실이 아닌 경우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저장하고 검토(Preview) 또는 제출(Submit) 선택**
  - 검토 단계: 저장내용과 첨부서류 출력 가능

⋯› **제출 선택 시: 수수료 지불로 이동**
  - 확인창(Confirm message)에서 “OK” 클릭하여 수수료 납부화면으로 이동

6) 수수료 납부(online payment)

- **수수료 납부화면: 납부조회번호(payment reference number) 부여 및 수수료 납부 가능**
  * 온라인 납부만 가능
  * (Form I) 10,000루피, (Form II) 5,000루피, (Form III) 500루피, (Form IV) 10,000루피

- **수수료 납부: 인도국영은행(State Bank of India)에서 온라인 납부**
  - Pay online 클릭 ⇨ SBI Collect로 이동 ⇨ 거래참조번호(transaction reference number) 입력 ⇨ 영수증 발급 (pdf 저장 및 출력 가능)

- **수수료 납부 확인**
  - ABS E-filing에서 해당 신청절차를 선택하여, 수수료 납부절차에서 납부조회번호 입력 및 영수증 업로드

- **수수료 납부절차 완료 시, 신청번호(Application number)를 포함한 접수서 발급**
  * 주의: 비전자서명 선택 시, 접수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이후 원본을 NBA로 제출

4절 지식재산권 취득

◆ **대상자원: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Form I)에 대한 NBA 승인 획득한 자원(ABS지침 8(2)조)**

◆ **신청목적**

• 인도에서 획득한 생물자원/전통지식에 대한 연구 또는 정보에 기초한 신기술에 대해 인도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신청(법 6(1)절, 규범 18(1)조)

※ 참고: 특허신청

-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당국의 특허승인 이후 그러나 특허검인 이전에 NBA 허가를 받을 수 있음(법 6(1)절 단서조항)

◆ **승인대상자: 외국인 및 내국인**

• 외국인
  - 외국인
  - 재외동포 인도인
  - 외국 법인/조합/기관
  - 외국자본이나 경영이 참여하는 인도 법인/조합/기관
• 내국인
  - 인도 시민권자
  - 인도 법인/조합/기관

◆ **이익공유 방법 (법 6(2)절)**

• NBA는 신청 승인 시,
  - 이익공유 수수료 또는 로얄티를 부과하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부과할 수 있음, 또는
  -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공유를 포함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승인 예외**

• 2001년 식물변종및농민권리보호법(Protection of Plant Variety and Farmers Right Act, 2001) 상의 지식재산권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음(법 6(3)절, ABS지침 8(1)조)
  - 승인서류 사본을 NBA로 제출 필요(법 6(4)절)

1. 준비서류

- 개인: 신분증 사본, 여권사본, 승인서한 사본(대리신청 시)
- 법인/기관: 관련 증빙서류(등록증 등) 사본, 신청대리자 승인서한 사본
- 인도 내 연락처: 연락자 대리 승인서 사본, 인도 신분증 사본 (해당 시)
- IPR에 이용된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에 대한 NBA 승인서 사본
- 신청자 전자서명서

※ 주의: 첨부(업로드)되는 증빙서류는 사본 PDF 파일로 준비

2. 온라인 신청절차

◆ ABS e-filing 로그인

- ABS e-filing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 “Apply Online”을 클릭하여, 신청서 양식 선택: Form III 선택

◆ 신청서 작성순서

- Part 1 ⇨ Part 2 ⇨ Part 3 ⇨ Part 4 ⇨ 검토 ⇨ 수수료

1) Part 1: 개인 또는 기관 프로필 작성

- **개인인 경우**
  - 신청자 성명, 국적, 주소(신분증과 동일하게),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 신분증 사본, 여권 사본, 승인서한(대리인 신청) 사본 업로드

  * 승인서한(authorized letters): 승인받으려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는 승인서한 제출
  - 신청자 프로필 선택: 과학자, 학생, 연구자, 기타 중 선택

- **기관(법인 등)인 경우**
  - 기관: 기관명, 기관유형(정부기관/기관/회사 중 선택), 지위(외국법인/ 인도법인(외국 지분 또는 경영 참여)/인도법인 중 선택),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웹주소, 업종(연구/ 제조/사업/무역/기타 중 선택) 입력, 기관 등록서류 사본 업로드
  - 대리인: 성명, 도착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입력, 대리 승인서한 사본 업로드

⋯› **저장하고 인도 내 연락처 입력**

• **인도 내 연락처 주소 (해당하는 경우)**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및 인도 신분증 사본 업로드

⋯› **저장하고 Part 2 이동**

2) Part 2: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세부사항

① IPR의 신기술 세부사항

1. 신기술 제목
2. 신기술 요약
3. 신기술 출원할 지역 (인도 지역 중 선택)

⋯› **저장하고 다음 정보 입력**

4. IP 출원 진행 여부: Yes/No 중 선택
   - 해당 시(Yes): 국가, 특허출원 번호, 진행상황 입력

⋯› **저장하고 다음 정보 입력**

② 신기술에 사용된 대상 생물자원/전통지식 세부사항

1. 접근대상: 생물자원, 전통지식, 모두 중 선택
2. 대상 생물자원: 식물, 동물, 미생물 중 선택
3. 일반명칭
4. 학명
5. 생물자원 부위 (줄기, 씨앗, 과실, 뿌리, 잎, DNA, 기타 중 선택)

⋯› **저장하고 다음 정보 입력**

6. 신기술에 이용된 생물자원/전통지식의 접근에 대한 NBA 승인 획득 여부
   - Yes/No 중 선택
   - Yes 선택 시: 신청 번호, 승인 날짜 입력, 승인서 사본 첨부
   - No 선택 시: NBA 사전승인서 미획득 사유 작성

⋯› **저장하고 Part 3 이동**

3) Part 3: 전통지식 및 접근목적

① **신기술에 사용된 생물자원/전통지식 취득지역 정보**

1. 학명
2. 접근 근원지: 야생(wild), 배양(cultivated), 시장(market), 무역상(trader), 기탁소(repositories), 기관(institution), 기타(others) 중 선택
3. 주소 입력(주(state), 지방(district), 도시(town), 마을(village))

⋯› **저장하고 다음 정보 입력**

4. 생물자원/전통지식을 외국에서 획득했는지 여부: Yes/No 중 선택
   - Yes 선택 시: 생물자원/전통지식의 일반명 및 학명, 획득한 국가로부터 승인 여부

⋯› **저장하고 다음 정보 입력**

- **신기술에 사용된 전통지식 세부사항 및 전통지식 보유 개인/공동체**
  - 해당(applicable)과 해당없음(not applicable) 중 선택
  - 해당 시: 세부사항 입력 (500단어 이내)

⋯› **저장하고 다음 입력**

- **공동체/개인의 지리적 위치 (전통지식 해당 시)**
  - 공동체/개인의 동의: 공동체, 개인, 해당없음 중 선택
  - 공동체 또는 개인 선택시: 공동체/개인의 명칭/성명, 주소

⋯› **저장하고 다음 입력**

- **R&D 수행 기관 세부사항**
  - 기관명, 연락처 세부사항

- **신기술 상업화로 인한 경제적, 생물학적, 과학적 또는 기타 이익 세부사항 입력 (500 단어 이내)**

⋯› **저장하고 Part 4 이동**

4) Part 4: 선언서

- **서약방법: 전자서명 또는 비전자서명 선택**
  - 전자서명 선택: 전자서명서 업로드
  - 비전자서명 선택: 수수료 납부 완료 이후 접수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이후 NBA로 제출

  ※ 주의: 선택 후 수정 불가

⋯› 저장하고 서약서 이동

- **서약내용**
  - 나는/우리는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는 사실이며, 사실이 아닌 경우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저장하고 검토(Preview) 또는 제출(Submit) 선택
  - 검토 단계: 저장내용과 첨부서류 출력 가능

⋯› 제출 선택 시: 수수료 지불로 이동
  - 확인창(Confirm message)에서 “OK” 클릭하여 수수료 납부화면으로 이동

5) 수수료 납부(online payment)

- **수수료 납부화면: 납부조회번호(payment reference number) 부여 및 수수료 납부 가능**
  * 온라인 납부만 가능
  * (Form I) 10,000루피, (Form II) 5,000루피, (Form III) 500루피, (Form IV) 10,000루피

- **수수료 납부: 인도국영은행(State Bank of India)에서 온라인 납부**
  - Pay online 클릭 ⇨ SBI Collect로 이동 ⇨ 거래참조번호(transaction reference number) 입력 ⇨ 영수증 발급 (pdf 저장 및 출력 가능)

- **수수료 납부 확인**
  - ABS E-filing에서 해당 신청절차를 선택하여, 수수료 납부절차에서 납부조회번호 입력 및 영수증 업로드

- **수수료 납부절차 완료 시, 신청번호(Application number)를 포함한 접수서 발급**
  * 주의: 비전자서명 선택 시, 접수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이후 원본을 NBA로 제출

5절 제3자 이전

◆ **대상자원: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Form I)에 대한 NBA 승인 획득한 자원(ABS지침 11(1)조)**

◆ **신청목적**

- Form I-3까지 승인 획득한 생물자원/전통지식을 제3자에게 이전

※ 참고

-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 연구결과 이전, 지식재산권 신청에 대한 NBA의 사전승인을 획득한 이후에 제3자 이전이 가능하며, 별도로 제3자 이전을 신청하여 승인 필요(법 20(1)절, 20(2)절)

◆ **승인대상자: 외국인 및 내국인(개인)**

- 외국인
  - 외국인
  - 재외동포 인도인
  - 외국 법인/조합/기관
  - 외국자본이나 경영이 참여하는 인도 법인/조합/기관

1. 준비서류

- 개인: 신분증 사본, 여권 사본, 승인서한(대리신청 시) 사본
- 기관: 증빙서류(법인 등록증 등) 사본, 신청대리자 승인서한 사본
- 인도 내 연락처: 연락자 인도 신분증 사본 (해당 시)
- NBA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 승인서 사본
- 양도인과 양수인 간 계약서 사본
- 신청자 전자서명서

2. 온라인 신청절차

◆ ABS e-filing 로그인

- ABS e-filing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 “Apply Online”을 클릭하여, 신청서 양식 선택: Form IV 선택

◆ **제3자 이전 신청서 작성순서**

- Part 1 ⇨ Part 2 ⇨ Part 3 ⇨ Part 4 ⇨ 검토 ⇨ 수수료

1) Part 1: 개인 또는 기관 프로필 작성

- **개인인 경우**
  - 신청자 성명과 주소(신분증과 동일하게),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 신분증 사본, 여권 사본, 승인서한(대리인 신청) 사본 업로드

  * 승인서한(authorized letters): 승인받으려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는 승인서한 제출
  - 신청자 프로필 선택: 과학자, 학생, 연구자, 기타 중 선택

- **기관(법인 등)인 경우**
  - 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웹주소, 업종(연구, 제조, 사업, 무역, 기타) 입력, 기관 등록서류 업로드
  - 대리인: 성명, 도착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입력, 대리 승인서한 사본 업로드

⋯› **저장하고 인도 내 연락처 입력**

- **인도 내 연락처 주소 (해당하는 경우)**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및 인도 신분증 사본 업로드

⋯› **저장하고 Part 2 이동**

2) Part 2: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세부사항

- **대상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세부사항**
  1. 접근대상: 생물자원, 전통지식, 모두 중 선택
  2. 대상 생물자원: 식물, 동물, 미생물 중 선택
  3. 일반명칭
  4. 학명
  5. 취득부위 (줄기, 씨앗, 과실, 뿌리, 잎, DNA, 기타 중 선택)
  6. 취득물량
  7. 취득기간
  8. 전통지식 세부사항 (500자 이내)

⇢ **저장하고 다음 정보 입력**

- **접근승인 세부사항**
  - NBA 접근승인서 사본 업로드
  - 신청번호, 승인일자 입력

- **이익공유 방법/약정서 세부사항**
  - 존재여부 선택 (해당 시, 500자 이내 작성)

⇢ **저장하고 Part 3 이동**

3) Part 3: 제3자 세부사항

- **제3자 세부사항**
  - 개인 또는 기관 중 선택
  - 성명(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웹사이트 주소, 이메일 입력

⋯› **저장하고 다음 작성**

- **제3자 이전 목적**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접근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생명공학적, 과학적 또는 기타 이익 세부사항 (500자 이내)**
- **신청자와 제3자 간 계약서 사본 업로드(해당 시)**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제3자 이전으로 인해 인도/공동체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이익 (500자 이내)**
- **제3자 이전으로 발생하는 이익공유 방법 및 약정서 (500자 이내)**

⋯› **저장하고 Part 4 이동**

4) Part 4: 선언서

- **서약방법: 전자서명 또는 비전자서명 선택**
  - 전자서명 선택: 전자서명서 업로드
  - 비전자서명 선택: 수수료 납부 완료 이후 접수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이후 NBA로 제출

  ※ 주의: 선택 후 수정 불가

- **서약내용**
  - 나는/우리는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는 사실이며, 사실이 아닌 경우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저장하고 검토(Preview) 또는 제출(Submit) 선택**
  - 검토 단계: 저장내용과 첨부서류 출력 가능

⋯› **제출 선택 시: 수수료 지불로 이동**
  - 확인창(Confirm message)에서 "OK" 클릭하여 수수료 납부화면으로 이동

5) 수수료 납부(online payment)

- **수수료 납부화면: 납부조회번호(payment reference number) 부여 및 수수료 납부 가능**
  * 온라인 납부만 가능
  * (Form I) 10,000루피, (Form II) 5,000루피, (Form III) 500루피, (Form IV) 10,000루피

- **수수료 납부: 인도국영은행(State Bank of India)에서 온라인 납부**
  - Pay online 클릭 ⇨ SBI Collect로 이동 ⇨ 거래참조번호(transaction reference number) 입력 ⇨ 영수증 발급 (pdf 저장 및 출력 가능)

- **수수료 납부 확인**
  - ABS E-filing에서 해당 신청절차를 선택하여, 수수료 납부절차에서 납부조회번호 입력 및 영수증 업로드

- **수수료 납부절차 완료 시, 신청번호(Application number)를 포함한 접수서 발급**
  * 주의: 비전자서명 선택 시, 접수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이후 원본을 NBA로 제출

6절 이익공유협약 체결과 이익공유 비율

1. 이익공유협약 체결

◆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 연구결과 이전, IPR 신청 및 제3자 이전 신청절차가 완료되면, NBA는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와 협의하여 승인 또는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법 19.3절 및 20.3절)

◆ NBA가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NBA는 신청자와 이익공유협약(Benefit sharing agreement) 체결(법 21절, ABS지침 1(2)조, 2(2)조, 6(2)조, 8(2)조, 11(2)조)

⋯› 이익공유 및 이익공유협약 체결 대상자: NBA

2. 이익공유 비율

◆ 이익공유 공식은 개별적으로(case-by-case) 결정(규범 20(2)조)

◆ 이익공유 비율은 신청자와 NBA간에 상호 합의로 결정(규범 20(5)조)

- NBA는 이익공유 비율 결정 시 지역기구(BMCs) 및 이익청구자와 협의

◆ 생물자원/전통지식이 특정 개인이나 개인집단으로부터 획득된 경우, NBA는 지방 행정기관을 통해 이들 개인이나 집단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규범 20(8)조)

- 이러한 개인이나 집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금전적 이익은 국가 생물다양성기금(National Biodiversity Fund)에 기탁
- 평가이익의 5%는 NBA 또는 SBB의 행정처리 비용으로 배정(규범 20(9)조)

3. 이용 목적별 이익공유 비율

1) 생물자원 접근

(1) 연구목적

◆ 연구목적 또는 연구목적의 생물조사 /생물이용을 위한 접근신청 승인 시, NBA는 신청자와 이익공유협약(benefit sharing agreement)을 체결 (ABS지침 1(2)조)

◆ 생물자원이 경제적 가치가 높을 경우, 신청자와 NBA가 합의한 선급금(upfront payment) 금액을 이익공유협약에 포함 (ABS지침 1(2)조 단서조항)

⋯› 2019년 개정안과 비교(최종 개정안은 수정될 수 있음)

•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에 대한 선급금 지불

구분	2014년 ABS지침	2019년 개정안
대상자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	보존/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
조건	NBA와 신청자가 합의한 바와 같이	상업적 연구목적으로 접근

• **2019년 개정안은** 대상자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상업적 연구목적인 경우로 명시함으로써, **비상업적 연구목적에 대해서는 선급금이 부과되지 않음을 명확 하게 규정**

(2) 상업적목적

◆ 상업적 목적 또는 상업적 목적의 생물조사/생물이용을 위한 접근 신청 승인 시, NBA는 신청자와 이익공유협약을 체결(ABS지침 2(2)조)

◆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생물자원의 구입가격 또는 상품의 연간 공장도 판매금액 중 선택하여 이익공유할 수 있음

가. 구입금액 기준 이익공유 비율

① 신청자가 제공자와 이익공유협약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신청자(거래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생물자원 제공자(공동산림관리위원회*, 산림 거주자, 부족 경작자, Gram Sabha)와 사전에 이익공유협약을 체결 하지 않고 이들에게서 직접 생물자원을 구입한 경우 이익공유 비율 (ABS지침 3(1)조)

* 공동산림관리위원회: Joint Forest Management Committee(JFMC)

신청자 분류	이익공유 비율
거래업자	생물자원 구입가격 1-3%
제조업자	생물자원 구입가격 3-5%

◆ 거래업자가 자신이 구입한 생물자원을 다른 거래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익공유 비율

구매자 분류	이익공유 비율
거래업자	구입가격 1-3%
제조업자	구입가격 3-5%

※ 참고

구매자의 이익공유 범위는 구입가격에서 이익공유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부담(다만, 직전 판매자의 이익공유증명서 제출 필요)

<예시>

- B의 이익공유 비율과 금액 = (b-a)의 1~3%
  - * A: 신청자 거래업자
  - * B: 구매자 거래업자
  - * a: 신청자의 구입가격(이익공유 완료)
  - * b: 구매자의 구입가격

② 신청자가 제공자와 이익공유협약 체결한 경우

◆ 신청자(거래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생물자원 제공자(JFMC, 산림 거주자, 부족 경작자, Gram Sabha)와 사전에 이익공유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서 직접 생물자원을 구입한 경우 이익공유 비율 (ABS지침 3(2)조)

신청자 분류	이익공유 비율
거래업자	생물자원 구입가격 3% 이상
제조업자	생물자원 구입가격 5% 이상

⋯› 2019년 개정안과 비교(최종 개정안은 수정될 수 있음)

- 2014년 ABS지침은 이익공유협약을 체결한 경우와 체결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이익공유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9년 개정안은 구분하지 않고 '생물자원 구입가격의 3-5%'로 규정

③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의 이익공유

◆ 백단유(sandalwood), 자단(red sanders) 등과(파생물 포함) 같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의 경우, NBA 또는 SBB가 정한 바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금액의 5% 이상의 선급금(upfront payment)을 이익공유에 포함할 수 있음(ABS지침 3(3)조)

◆ 또한, 낙찰자 또는 구매자는 생물자원에 접근하기 전에 지정된 자금을 지불해야 함

나. 상품의 연간 공장도 판매금액 기준 이익공유 비율

◆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익공유 지불방식으로 상품의 연간 공장도 판매금액 기준으로 선택 가능**

- 상품의 연간 공장도 판매금액(연간 공장도 판매금액에서 정부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따라 0.1~0.5% 이내로 이익공유 (ABS지침 4조)

상품의 연간 공장도 판매금액	이익공유 비율
1,00,00,000 루피 (약 168,800,000원)	0.1 %
1,00,00,001~3,00,00,000 루피 (약 168,800,000 ~ 506,400,000원)	0.2 %
3,00,00,000 루피 이상 (약 506,400,000원 이상)	0.5 %

* 법률에 지불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사용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 **2019년 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최종 개정안은 수정될 수 있음)**

연간 총매출액	NBA/SBB에 지불할 수수료 (3년간 1회)	연간 공장도 판매금액에서 정부세금 제외한 금액	연간 이익공유비율	BMC에 수수료 지급한 경우
1,00,00,000 루피	0	1,00,00,000 루피	500 루피	0
1,00,00,001~ 3,00,00,000 루피	25,000 루피	3,00,00,000 루피	0.2%	이익공유금액 25% 삭감
3,00,00,000 루피 이상	25,000 루피	3,00,00,000 루피 이상	0.5%	

- 지식재산권 신청과 관련된 이익공유를 지불한 경우, 이익공유 의무가 없음
- 보존/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은 이익공유금액에서 25% 증가

다. BMC의 수수료 징수

◆ 상업적 목적 접근의 경우, 이익공유 금액 이외에 지역별 생물다양성관리 위원회(BMC)가 수수료 징수(ABS 지침 5)

※ 참고: 생물자원 접근(Form I)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발급된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분석내용

생물자원 접근 신청에 대해 발급된 61건의 IRCC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MAT 주요내용
  - 이익공유 비율: (1) 선급금 지급 18건, (2) ABS 지침 4조에 따른 이익공유 8건 등 총 26건의 신청서에 대해 이익공유 명시
    * 선급금: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 접근 시 연구목적 및 상업적 목적 모두 선급금을 지불(ABS지침 1(2)조, 3(3)조)
    * ABS지침 4조: 상품의 연간 공장도 판매금액 기준 이익공유 비율 명시
  - 기타내용: (1) NBA 사전승인 없이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없고, (2) 신청서별로 분기별/반기별 보고서 제출, (3) 합의된 장소에서 정해진 수량(생플) 만을 취득, (4) 향후 상업화로 전환 또는 지식재산권 신청시 NBA의 사전승인을 받고 이익공유협약을 체결하도록 명시

- 제3자 이전: NBA의 사전승인 없이 생물자원을 제3자에게 이전/양도를 금지

- 특이점: 생물자원 접근의 경우, 각 신청서별로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허가증 만료일을 지정하고 있어, 생물자원 접근기한을 지정하고 있음.

⋯› ABS지침에서 규정된 이익공유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예상됨

국제의무준수인증서

-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는, 의정서 17.3조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자가 제공국의 접근절차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고 MAT를 체결했다고 증빙하는 서류로서, ABS정보공유체계(http://absch.cbd.int)에 공개됨**
- **의정서 17.4조는 IRCC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로서 다음을 제시:**
  - 발급기관, 발급일자, 제공자, 인증번호, PIC 승인 받은자(신청자), MAT 체결 여부, PIC 획득 여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

※ 참고: 인도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 시 이익공유협약 모델

1. 연구목적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 이익공유협약 모델

- 계약당사자: NBA v. 신청자

1. 정의 및 목적
2. 신청자의 PIC 승인 신청
3. 계약양도(NBA 승인없이 제3자 이전/양도 불허)
4.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에 대한 조건
5. 신청자의 법적책임과 배상
6. 계약종료
7. 통고(양 당사자 연락처)
8. 기밀사항
9. 중재
10. 준거법 및 관할권
11. 면제
12. 개정

- 서명

2. 상업적 목적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 이익공유협약 모델

- 계약당사자: NBA v. 신청자

1. 정의 및 목적
2. 신청자의 PIC 승인 신청
3. 계약양도(NBA 승인없이 제3자 이전/양도 불허)
4.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에 대한 조건
5. 신청자의 법적책임과 배상
6. 계약종료
7. 로열티와 기타 이익공유
8. 보고서 및 감독
9. 기밀사항
10. 통고(양 당사자 연락처)
11. 중재
12. 준거법 및 관할권
13. 면제
14. 개정

- 서명

2) 연구결과 이전

◆ 생물자원 연구결과 이전을 승인 시, NBA는 신청자와 이익공유협약 체결(ABS지침 6(2)조)

◆ 신청자는 NBA에게 상호 합의된 금전적 및/또는 비금전적 이익을 지급해야 함(ABS지침 7조)

◆ 금전적 이익공유비율 = 신청자가 얻는 금전적 이익의 3~5%

⋯› 2019년 개정안과 비교(최종 개정안은 수정될 수 있음)

- 2019년 개정안의 금전적 이익공유비율 = 신청자가 얻는 금전적 이익의 2-5%

※ 참고: 연구결과 이전(Form II)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발급된 IRCC 분석내용

연구결과 이전 신청에 대해 발급된 1건의 IRCC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MAT 내용**
  1. 신청자는 생물자원이 아닌 연구결과만을 이전
  2. 신청자는 이전대상에게서 징수한 금전적 대가의 3%를 이익공유 지분으로 NBA에 납부
  3. 이전 대상 연구결과는 동 계약 하의 목적에 한정됨
  4. 신청자와 이전대상자는 연구결과가 지식재산권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 NBA의 사전승인을 취득 의무

- **제3자 이전: NBA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연구결과 이전/양도를 금지**

⋯› ABS지침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이익공유 비율을 신청자가 얻은 금전적 이익의 3-5%로 예상 가능

※ 참고: 연구결과 이전에 대한 이익공유협약 모델

- 계약당사자: NBA v. 신청자

1. 정의 및 목적
2. 신청자의 연구결과 이전 승인 신청
3. 양도와 이전
4. 연구결과 이전 조건
5. 제3자 이전 금지(NBA 승인없이 제3자 이전/양도 불허)
6. 로열티와 기타 이익공유
7. 기밀사항
8. 신청자의 법적책임과 배상
9. 계약종료
10. 통고(양 당사자 연락처)
11. 중재
12. 준거법 및 관할권
13. 면제
14. 개정

- 서명

3) 지식재산권 획득

◆ 지식재산권 획득 신청을 승인 시, NBA는 신청자와 이익공유협약을 체결(ABS지침 8(2)조)

◆ 신청자는, 획득한 지식재산권을 상업화하는 경우, NBA에게 상호 합의된 금전적 및/또는 비금전적 이익을 지불(ABS지침 9(1)조)

◆ 금전적 이익공유 비율(ABS지침 9(2)~9(3)조)

- 신청자가 상품/공정법/기술을 상업화 하는 경우: (연간 공장도 판매금액-정부세금)의 0.2~1% 지불
- 신청자가 상품/공정법/기술을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assign)/라이센스(license)한 경우: 신청자는 양수인(assignee)/실시권자(licensee)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의 3~5%와 연간 로얄티의 2~5%를 NAB에게 지불

⋯› 2019년 개정안과 비교(최종 개정안은 수정될 수 있음)

- 신청자가 상품/공정법/기술을 상업화 하는 경우: (연간 공장도 판매금액-정부세금)의 0.05-1% 지불
- 신청자가 상품/공정법/기술을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라이센스한 경우: 신청자는 양수인(assignee)/실시권자(licensee)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의 2-5%와 연간 로얄티의 2-5%를 NAB에게 지불

※ 참고: 지식재산권 신청(Form III)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발급된 IRCC 분석내용

지식재산권 신청에 대해 발급된 157건의 IRCC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MAT 내용

<이익공유 비율> 157건 중 156건에 대한 이익공유 비율 명시

- 연간 공장도 판매금액의 0.2% 126건, 0.4% 1건, 0.5% 3건, 1% 3건
- 상품의 순매출액의 2%를 로얄티로 지급 4건
- 순수익(선급금/면허료/양도료/로열티)의 2%를 NBA에 연례 지급, 3건
- 상품 공장출하기준 최고가의 3%를 로얄티로 지급 11건
- 순수익의 5%를 로얄티로 지급 또는 총매출의 2% 지급 1건

⇨ 지식재산권 신청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이익공유 비율은 연간 공장도 판매 금액 기준의 0.2%에 해당

수수료 또는 로얄티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2-5%로 다양하고 그 기준이 다르므로 MAT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

<기타내용>

- 지식재산권 취득시 NBA에 통보의무(30일, 60일 또는 6개월 이내)
- 지식재산권을 상업화하는 경우, NBA로 통보

- 반기별/분기별 보고서 NBA로 제출

• **제3자 이전: 157건 중 152건에 대한 제3자이전 이익공유 비율 명시**
  - 사용자가 수령한 수수료와 로얄티: 3%, 2% (129건), 2%, 5% (1건), 4%, 3% (2건), 4%, 4% (2건), 4%, 5% (1건), 5%, 5% (11건)
  - 면허료 및/또는 로열티 또는 순매출액의 5%(정부세 및 추가 부담금 제외) 2건
  - 사용자가 수령한 로얄티의 2%(4건)
  ⇨ 지식재산권을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ABS지침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수령한 수수료의 3-5%와 연간 로얄티의 2-5%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 있음

⋯› 지식재산권 신청 시 체결되는 이익공유협약에서 이익공유은 판매금액과 제3자이전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두가지 내용 모두 확인 필요

4) 제3자 이전

◆ **접근이 승인된 유전자원/전통지식을 제3자에게 연구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전 신청을 승인 시, NBA는 신청자와 이익공유협약을 체결 (ABS지침 11조)**

◆ **이익공유 비율(ABS지침 12(2)~12(3)조)**

• 신청자(이전자)는 협약의 조건에 의거하여 양수인(讓受人)에게 받은 금액 및/또는 로얄티의 2~5%를 이익공유로 NBA에게 지급
•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 신청자는 NBA에 상호 합의된 선급금을 NBA에게 지급

⋯› 2019년 개정안과 비교(최종 개정안은 수정될 수 있음)

•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에 대한 선급금 지불 규정 삭제

※ 참고: 제3자 이전(Form IV)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발급된 IRCC 분석내용

제3자 이전 신청에 대해 발급된 1건의 IRCC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MAT 내용**
  1. 사용자는 취득한 생물자원의 상업화의 경우, NBA의 사전승인 의무
  2. 사용자는 취득한 생물자원에 의한 지식재산권 신청 시 NBA의 사전승인 의무
  3. 신청자는 합의된 조건에 따라 NBA에 연례보고서 제출

- **제3자 이전: 계약에 따라 승인된 사항은 제3자에게 이전 및 양도할 수 없음**(non-transferable and non-assignable)

⋯› 동 IRCC는 제공자, 신청자, 대상물질 등이 대외비로 되어 있고, MAT에 이익공유 비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 참고: 제3자 이전에 대한 이익공유협약 모델

- 계약당사자: NBA v. 신청자

1. 정의 및 목적
2. 신청자의 제3자 이전 승인 신청
3. 로열티와 기타 이익공유
4. 계약종료
5. 신청자의 법적책임과 배상
6. 통고(양 당사자 연락처)
7. 기밀사항
8. 중재
9. 준거법 및 관할권
10. 면제
11. 개정

- 서명

7절 승인 소요기간

◆ 생물자원 접근: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규범 14.3조)

◆ 연구결과 이전 승인: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규범 17.3조)

◆ 지식재산권 신청 승인: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규범 18.3조)

◆ 제3자 이전 승인: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규범 19.3조)

※ 참고: 신청서 제출일자

- **신청서 수령일자 = 수수료 납부 일자**
  * 온라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수수료 미납부 시 신청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주의 필요

◆ 승인신청 소요기간

- NBA의 승인 소요기간은 각 신청 목적별로 규정된 기간 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보임
- NBA 연간보고서에 따르면,[9)]
  - 2015~16년 간 349개 신청서가 접수되어 231개(전년도에 접수된 신청서 포함)가 신청절차가 완료되어, 신청서의 약 66%가 신청절차 완료
  - 2014~15년 간 206개 신청서가 접수되어 113개(전년도에 접수된 신청서 포함)가 신청절차가 완료되어, 신청서의 약 55%가 신청절차 완료

⋯› 이러한 신청서 수치는 전년도 접수된 신청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청 목적별 승인 소요기간이 3~6개월임을 고려했을 때, 인도의 각 신청 목적별 승인 소요기간은 법규에 규정한 대로 소요되는 것으로 여겨짐

9)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Annual Report 2014-15 & Annual Report 2015-16, (http://www.nbaindia.nic.in/content/103/37/1/reports.html, 2019.5.30.일 방문)

8절 공통사항

1. 신청 시 공통사항

◆ 업로드 할 모든 서류: PDF 파일로 준비

◆ 신청서 수정: 수수료 최종 납부 이전까지 Home 화면에서 수정 가능

◆ 신청서 작성기한: 신청서 작성 시작일자로부터 30일

※ 참고

-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NBA의 질문에 신청자가 기한 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철회될 수 있음
- 이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고자 할 때, 새로운 신청서로 제출하고 수수료도 다시 납부해야 함

◆ 담당자 연락처

- (이메일) techbs@nba.nic.in, (전화번호) +91-44-2254-2777

2. 담당자 연락처

구분	담당기관	관련 정보
국가연락기관	환경산림기후변화부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s and Climate Change)	담당자: Ms. Sujata Arora (Advisor) 이메일: sujata@nic.in 주소: V-235, Vayu Wing, Second Floor Indira Paryavaran Bhawan, Jor Bagh Road, Aliganj New Delhi, 110003, India 웹주소: http://www.cbd.int/kb/record/focalPoint/3544 전화번호: +91-11-2469-5135
국가책임기관	생물다양성총국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담당자: Mr. Rabikumar (Secretary) 이메일: techbs@nba.nic.in 기타: secretary@nba.nic.in chairman@nba.nic.in secretary@nbaindia.org 주소: 5th Floor, TICEL Biopark, CSIR Road, Taramani Chennai, Tamilnadu, 600 113, India 웹주소: http://www.nbaindia.nic.in* 온라인 접근신청: http://absefiling.nic.in 전화번호: +91-44-2254-2777

* NBA의 웹주소는 www.nbaindia.org에서 www.nbaindia.nic.in으로 변경됨.

⋯› 담당자 연락처는 2019년 6월 30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ABSCH(https://absch.cbd.int/countries/IN)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

IV

생물자원 접근신청 이후의 절차

1.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신청 이후 절차 70
2. 국내 이행준수 절차 73

4장 생물자원 접근신청 이후의 절차

1절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신청 이후 절차

◆ 신청자가 온라인(ABS e-filing)을 통해 신청절차를 완료하면, NBA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신청자와 이익공유협약을 체결하게 됨

◆ 이러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NBA는 승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제의무준수인증서(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IRCC)를 생물다양성협약(CBD) ABS정보공유체계(ABSCH)에 공유함

1. 생물자원 접근 및 승인 이후 절차

◆ NBA 승인 및 이익공유협약 체결 절차

- 신청자가 온라인 신청절차를 완료하면, NBA가 SBB/BMC와 협의를 거쳐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여부를 결정
- NBA가 승인 시, 완료서한에 이익공유협약을 포함하여 신청자에게 전달
- 신청자는 이익공유협약에 서명하여 NBA로 송부
- NBA는 승인내용을 공표

◆ 분쟁해결절차

- NBA의 이익공유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신청자는 통보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법 52절)

  * 인도의 환경법원(National Green Tribunal)으로 항소[10)]

10) CBD, India's interim Report on implementation of Nagoya Protocol, ABSCH-CNA-IN-202013-2, 2017. 11. 2 (https://absch.cbd.int/countries/IN, 2019.6.2.일 방문)

2.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발급

◆ 인도의 국제의무준수인증서 발급 현황

- 인도는 2019년 6월 기준(2015.10.1.~2019.2.1.)* 220개**의 국제의무준수 인증서(IRCC)를 발급[11)]

  * 동 기간은 인도가 CBD ABS정보공유체계(ABSCH)에 공표한 일자 기준이며, 인도가 최초로 IRCC를 발급한 일자는 2015년 3월 27일임

  ** 2016-17년 기준,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 총 신청건수는 1,633건 (Form-I 313건, Form-II 50건, Form-III 1189건, Form-IV 81건)이므로[12)], 신청건수 중 약 13.5%에 대해서 IRCC가 발급된 것으로 추정

- 이는 CBD ABS정보공유체계(ABSCH)에 제출된 전체 IRCC 440개 중 50%에 해당하고 있어, 인도가 유전자원 접근 승인과 이익공유 절차를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중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인도의 국제의무준수인증서 분석

- 인도가 발급한 220개 IRCC 중 Form-I 61건, Form-II 1건, Form-III 157건, Form-IV 1건으로 지식재산권 신청에 대한 사전승인이 가장 많음

신청서식	IRCC 발급수 ('15.10.1.~'19.2.1)	신청자 분류		
Form I	61건	내국인: 16건 외국인: 12건 대외비: 33건	•내국인 - 기업 7건 - 기업/개인 8건 - 개인(대학) 1건	•외국인 - 독일-기업 1건 - 말레이시아-기업 1건 - 미국-개인(대학) 1건 - 영국-개인(대학, 연구소) 3건 - 오스트리아-개인 1건 - 인도/스웨덴-개인 1건 - 일본-개인 1건 - 체코/인도-연구소(박물관)/개인(대학) 1건 - 탄자니아-개인(연구소) 1건 - 프랑스-연구소 1건
Form II	1건	대외비		

11) CBD, ABSCH-India (https://absch.cbd.int/countries/IN, 2019.5.31. 방문)

12)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Annual Report 2016-17 (http://www.nbaindia.nic.in/content/103/37/1/reports.html, 2019.5.30.일 방문),

Form III	157건	내국인: 56건 외국인: 1건 대외비: 100건	• 내국인 - 개인(개인 26, 대학 3, 연구소 2) 31건 - 개인/기업 2건 - 개인/연구소 4건 - 기업 1건 - 대학 1건 - 연구소 2건 - 연구소(정부) 15건	• 외국인 - 미국/인도-개인 1건
Form IV	1건	대외비		
총계	220건			

- Form-I의 경우, IRCC 발급일과 만료일이 신청서 별로 1년에서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IRCC 유효기간 3년이 가장 많음

  * 1년/8건, 2년/8건, 3년/33건, 5년/11건, 만료일 미지정 1건

- 신청자는 220건 중 85건(약 38.6%)에 대해서만 공개되고 135건은 대외비로 분류되어 확인되지 않음
- 공개된 신청자를 확인해 보면
  - 생물자원 접근은 내국인 16건, 외국인 12건으로 내국인의 신청건수가 약간 앞서지만, 지식재산권 신청은 내국인 56건, 외국인 1건으로 신청자의 대부분이 내국인임
  - 공개된 신청자 중 외국인/기관의 경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체코, 말레이시아, 일본, 탄자니아 등의 개인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신청자는 없음

  * 대외비로 비공개된 신청자 중 우리나라 개인이나 기관/기업이 신청했을 가능성은 존재

2절 국내 이행준수 절차

◆ 인도에서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신청 승인을 받고 국내에서 해당 생물자원/전통지식을 이용하려는 경우, 국내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이하와 같음

1.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이용에 대한 절차준수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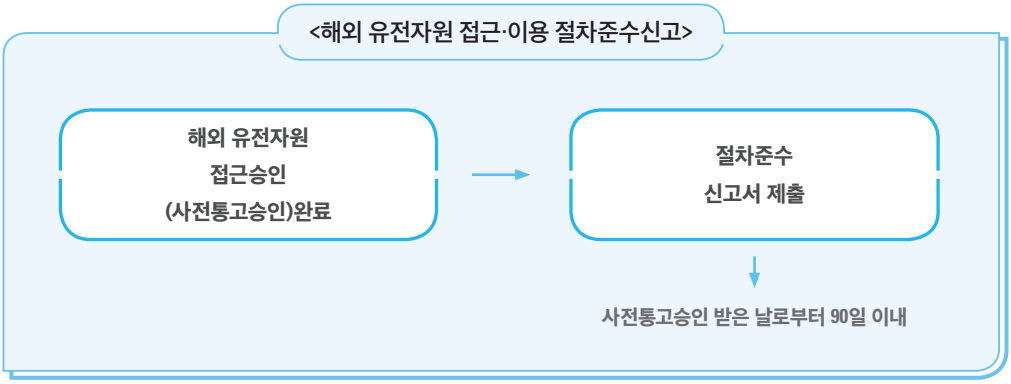

◆ 절차준수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유전자원법 제15조)

절차준수신고 대상	•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 • 단,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유전자원법 제15조
제출서류	• (필수)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준수신고서, 사전통고승인 증명서 • (추가)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신분(소속) 확인 증명 *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6호서식

◆ 신고서 제출 방법: 통합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제출

- 통합신고서비스(https://www.abs.go.kr) 접속
- 계정 생성 및 로그인
- “해외유전자원 접근 이용 절차준수 신고” 선택
- 국가점검기관(신고서 접수 기관) 선택
  * 선택된 기관의 소관 유전자원이 아닌 경우, 점검기관 담당자가 이송하여 처리됨
- 신고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 해외 유전자원 절차준수신고서 작성 예시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대표자) *홍길동*	② 소속(법인명) *㈜서울의약품*
	③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11-11-11111*	④ 연락처 (전화번호) *02-999-9999* (전자우편) *seoulmed@co.kr*
	⑤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서울의약품*	
유전자원 제공자	⑥ 성명(대표자) *Adam Smith*	⑦ 소속(법인명) *Indigenous Group*
	⑧ 국가명 *인도(India)*	⑨ 연락처 (전화번호) *+91 44 2254 2777* (전자우편) *secretary@nbaindia.org, chairman @nba.nic.in, secretary@nba.nic.in*
	⑩ 주소(사업장의 소재지) *Indigenous Group* *5th Floor, TICEL Biopark, CSIR Road, Taramani Chennai, Tamilnadu*	

사전통고 승인	발급 국가	발급 기관	승인번호	승인 날짜
	인도(India)	*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	*India/NBA/Appl/9/857*	*2019년 1월 1일*

유전자원 및 이용	⑪ 유전자원의 명칭(해당 생물종의 학명 및 일반명) *(학명: Chlorophytum borivilianum / 일반명: Musli)*	⑫ 수량 또는 농도([ ] 전통지식)
	⑬ 목적 [√] 상업적 [ ] 비상업적	⑭ 용도 [√] 의약용 [ ] 화장품용 [ ] 원예용 [ ] 기타( )
	⑮ 이익 공유 합의의 체결 여부 [√] 합의 [ ] 미합의	⑯ 미체결 사유
	⑰ 이익 공유 합의의 내용(합의한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 금전적 이익 공유 [ ] 비금전적 이익 공유 [√] 제3자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 ] 사용목적 변경에 관한 조건 [√] 이용자와 제공자 간 보고 또는 정보 공유 조건 [ ]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준거법 및 대안적 분쟁 해결책(조정, 중재 등) [ ] 기타 (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6 월 1 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소관 국가점검기관의 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국가점검기관의 장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가점검기관의 장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법인일 경우 ①란에는 대표자명을, ②란에는 법인명을, ③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⑤란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2. 제공자가 법인일 경우 ⑥란에는 대표자명을, ⑦란에는 법인명을, ⑩란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⑪ 유전자원의 명칭란에는 특정 유전자원의 명칭이 있을 경우 그 명칭과 함께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을 적고, 특정 유전자원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생물종의 학명과 일반명만을 적습니다.

4. ⑫ 수량 또는 농도란에는 접근한 유전자원의 수량 또는 농도를 적고, 전통지식에 접근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표를 합니다.

5. ⑬ 목적란, ⑭ 용도란은 복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6. ⑯ 미체결 사유란에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 공유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7. ⑰ 이익 공유 합의의 내용란에는 합의에 포함된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표를 합니다. 이 경우 복수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 처리 완료

부록

부록 1

인도 생물자원 접근 온라인 신청 메뉴얼 78

부록 2

접근 제한/금지 생물자원 95

부록 3

승인면제 생물자원 96

부록 4

보전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 97

부록 1

인도 생물자원 접근 온라인 신청 매뉴얼 (ABS E-filing - User Manual)[13]

13)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ABS e-filing, http://absefiling.nic.in/NBA/login/showDc?filename=manual&dataName=manual&id=50, 2019.6.2.일 방문

ABS E-filing – User Manual

Version 1.0

Contents

ABS E-filing – User Manual 3

About Application 3

To start with Application 4

To login to Application 4

To register in the Application 4

Using the Application 5

To apply online for NBA approval 5

To submit applications 14

To view/edit applications 14

To download documents 14

To view notifications 14

Using the Menu Bar 15

To edit the profile 15

To change the password 15

To logout the NBA Web application 16

Getting additional help 16

ABS E-filing Application – User Manual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 is an autonomous and statutory bod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s and Climate Change, Government of India. NBA is mandated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BD Act) and its Rule 2004. Its website helps users of biological resources and / or associated knowledge, to apply online for the approval of NBA, for carrying out various activities as indicated below :

Indian Individual/entity:

1. To transfer results of research on India's biological resources to a person/entity covered under section 3(2) of BD Act.
2. To obta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dia or outside, for invention based on research or information on biological resources obtained from India.

Non-Indian individual/Entity/ NRI / Indian entities having non-Indian participation in share capital or management

1. To access biological resources and /or associated knowledge, for research/ bio-survey/ bio-utilisation/commercial utilisation.
2. To transfer results of research on biological resources to a person/entity covered under section 3(2) of BD Act.
3. To obta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dia or outside, for invention based on research or information on biological resources obtained from India.
4. To transfer the accessed biological resources/knowledge to a third party.

Starting with Application

To login to ABS e-filing Application

To login to the ABS e-filing Application for the existing users: Under "**Sign in to your account"**, enter the Username, Password, and Captcha code; then click Login.

To login to the ABS e-filing Application for the new users: you need to register by clicking "**New Registration"** in the Application. The **New User Registration** window will appear as given be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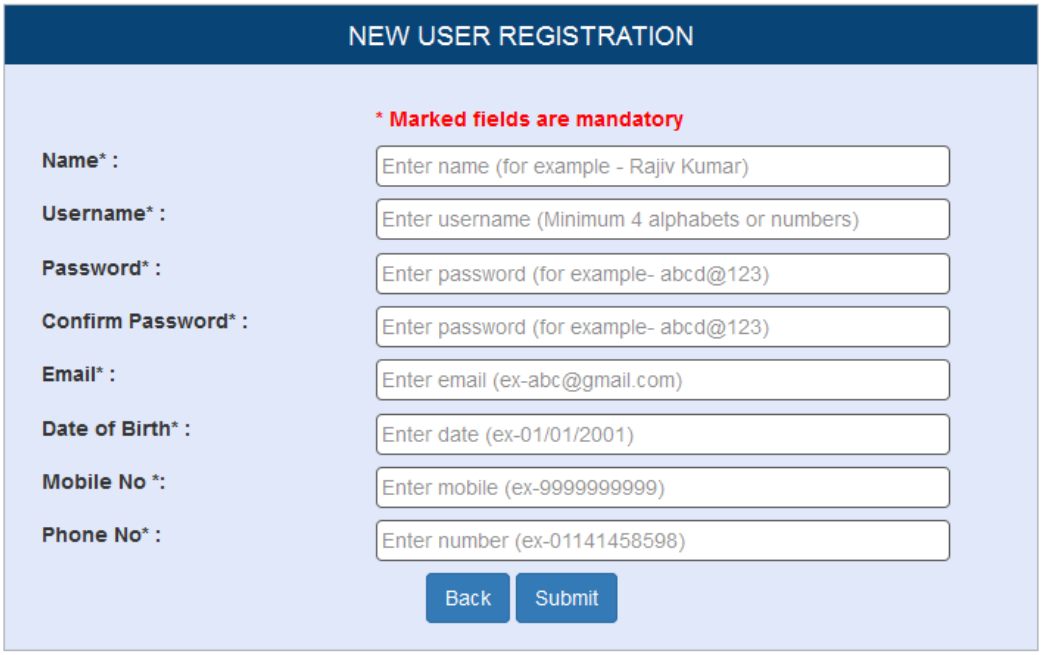

1. Enter the required details and click **Submit**.
2. An email will be sent to the mail id given by the user. By accessing the registered email to check the validation message and follow the link which will direct you to the ABS e-filing application.

Using ABS E-filing Application

The Home page of ABS E-filing application helps registered users to:

1. To apply online for approval
2. To view/edit applications
3. To download documents
4. To view notifications / status of applications

To apply online for approval

ABS e-filing application helps applicants to apply online for NBA approval. Follow the steps given below to apply online:

1. In the **Home** page of Application, click the "**Apply Online"** tab.
2. Click "**No"** when you are asked for assistance and you are aware what type of application form you have to submit.

3. Select the appropriate application form according to your status and the type of requirement.

If you don't know which form to use, click "**Yes"** in the previous step, then "Know Your Application Form" page will appear and follow the steps given below:

a. Choose the type of your identity and click **Next**.

b. Choose your status first and click “Next “. Choose the activity which you intend to carry out and then click “Next.”

c. The application chooses the application form according to your status and requirement. To confirm, click “**OK’**.

4. Now choose whether you want to apply as an '**Individual**' or as an '**Entity**'. Click "**Submit**." The Part 1 of the Form app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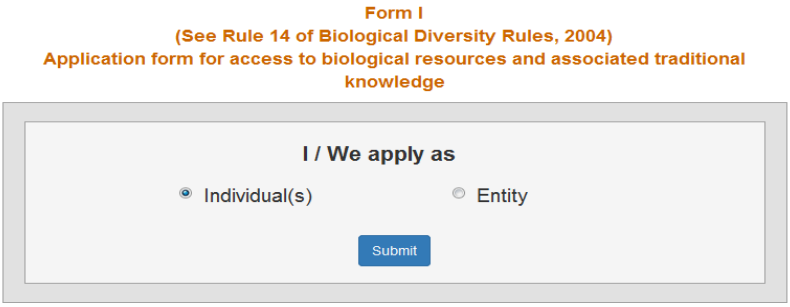

5. Fill in the necessary details, upload required documents, and click "**Save**". The newly added profile gets listed under the section **Profile of the Applic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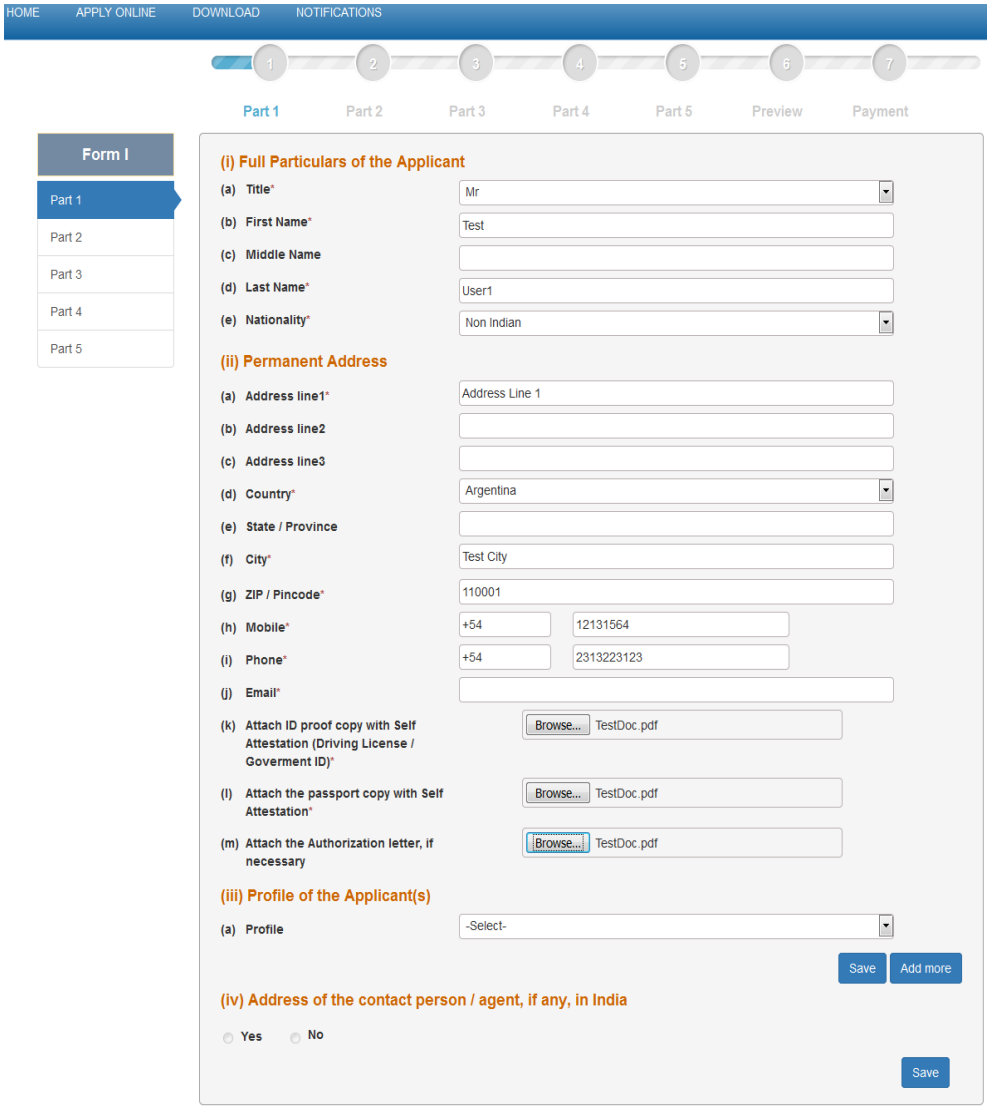

6. To edit or delete the profile, click the "**Edit/Delete"** button under "**Action"** against the profile. Also, you can add the address of contact person /agent by choosing "**Yes"**. Otherwise, choose "**No"** and click "**Next"**. The Part 2 of the Form app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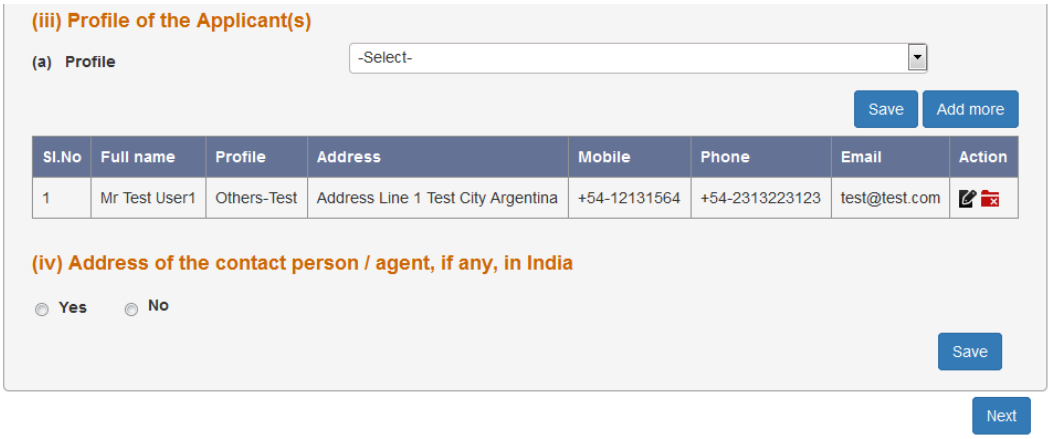

7. Provide necessary details and click **Save**. The details get added to the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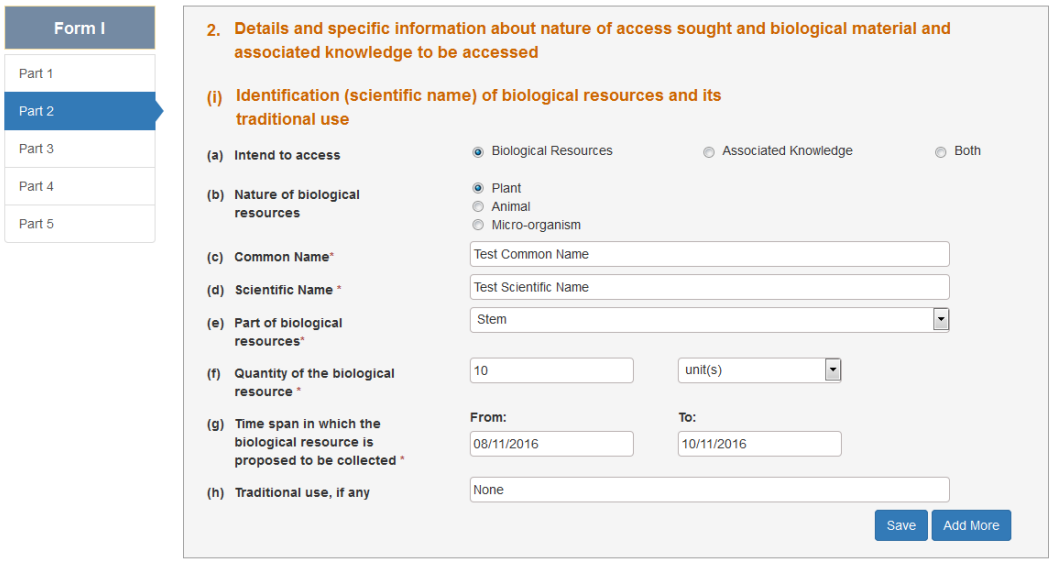

Note: You can add additional information by clicking the "**Add More"** button.

8. Above filled details will be appear in the tabular form as given below. To edit or delete the details, click the "**Edit/Delete"** button under "**Action"** against the information.

S.No.	Intend to access	Common Name	Scientific Name	Nature of Biological Resource	Part of Biological Resource	Quantity of Resource	Time span	Traditional use	Action
1	Biological Resources	Test Common Name	Test Scientific Name	Plant	Stem	10 unit(s)	08/11/2016 - 10/11/2016	None	

9. Add Geographical location details. Here applicant can provide multiple locations for single species. Please ensure the details are provided against each species given under the drop down box at sl.no.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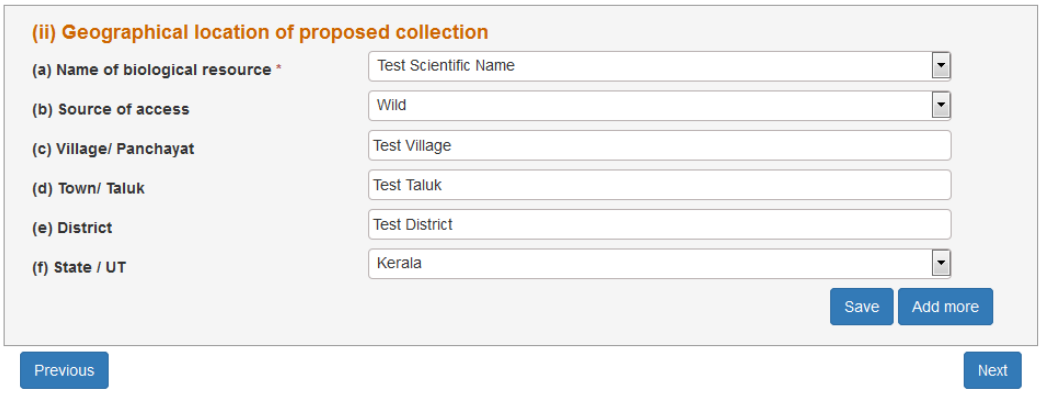

9. When the geographical details get added, click **Next** to move on next page.

S.No.	Name of biological resource	Source of access	Village/ Panchayat	Town/ Taluk	District	State	Name	Contact details	Action
1	Test Scientific Name	Wild	Test Village	Test Taluk	Test District	Kerala	N/A	N/A	

Previous Next

Note: To edit or delete the geographic details, click the "**Edit/Delete"** button under "**Action"** against the information.

10. Add the required details in each column and click "**Save**" (in each column separately). Finally, click "**Next"** to move Part 4 of the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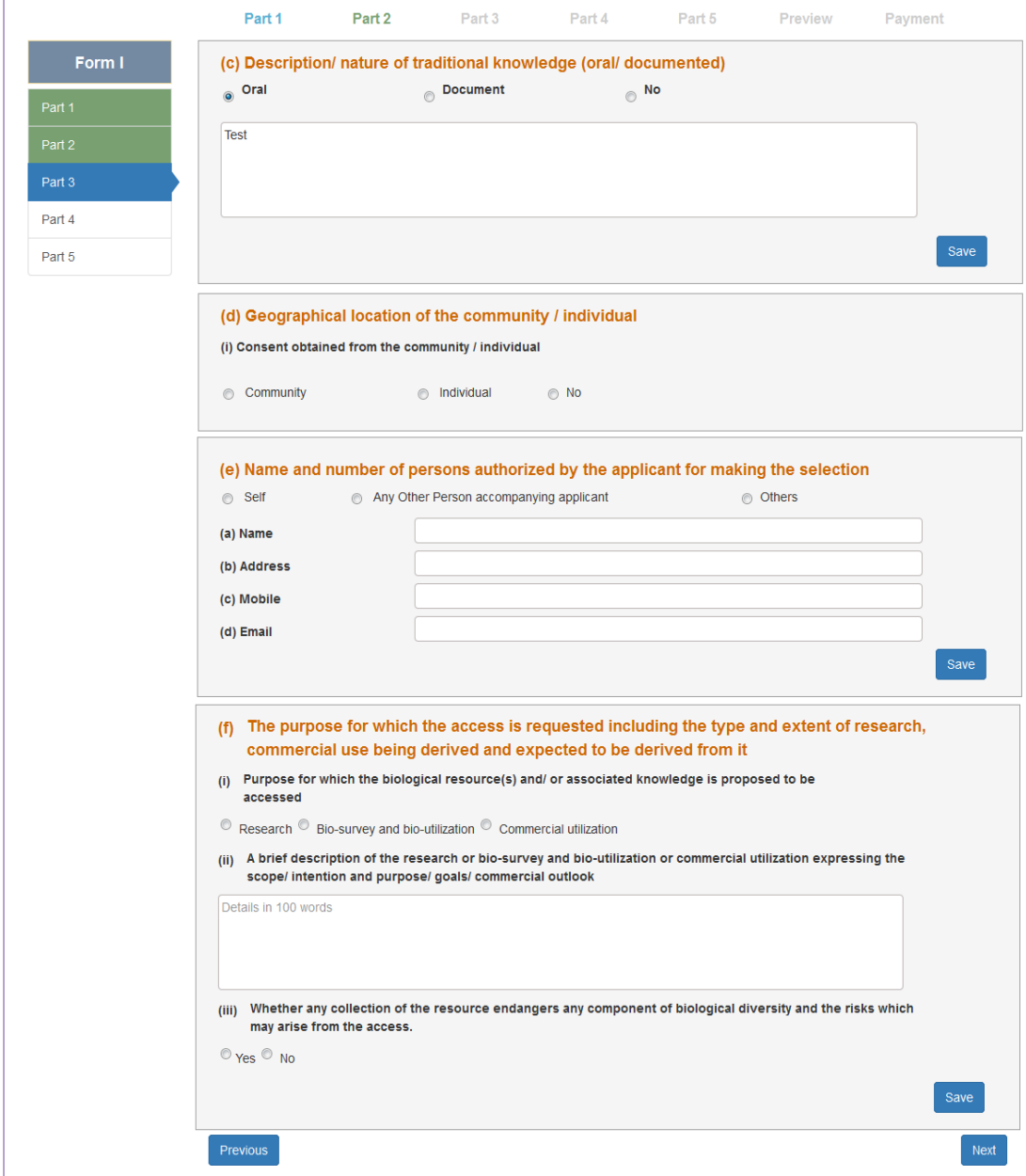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review
Payment
Form I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c) Description/ nature of traditional knowledge (oral/ documented)
Oral
Document
No
Test
Save
(d) Geographical location of the community / individual
(i) Consent obtained from the community / individual
Community
Individual
No
(e) Name and number of persons authorized by the applicant for making the selection
Self
Any Other Person accompanying applicant
Others
(a) Name
(b) Address
(c) Mobile
(d) Email
Save
(f) The purpose for which the access is requested including the type and extent of research, commercial use being derived and expected to be derived from it
(i) Purpose for which the biological resource(s) and/ or associated knowledge is proposed to be accessed
Research
Bio-survey and bio-utilization
Commercial utilization
(ii) A brief description of the research or bio-survey and bio-utilization or commercial utilization expressing the scope/ intention and purpose/ goals/ commercial outlook
Details in 100 words
(iii) Whether any collection of the resource endangers any component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risks which may arise from the access.
Yes
No
Save
Previous
Next

11. Enter the details and Click “**Save”,** finally click “**Next”** to move on Par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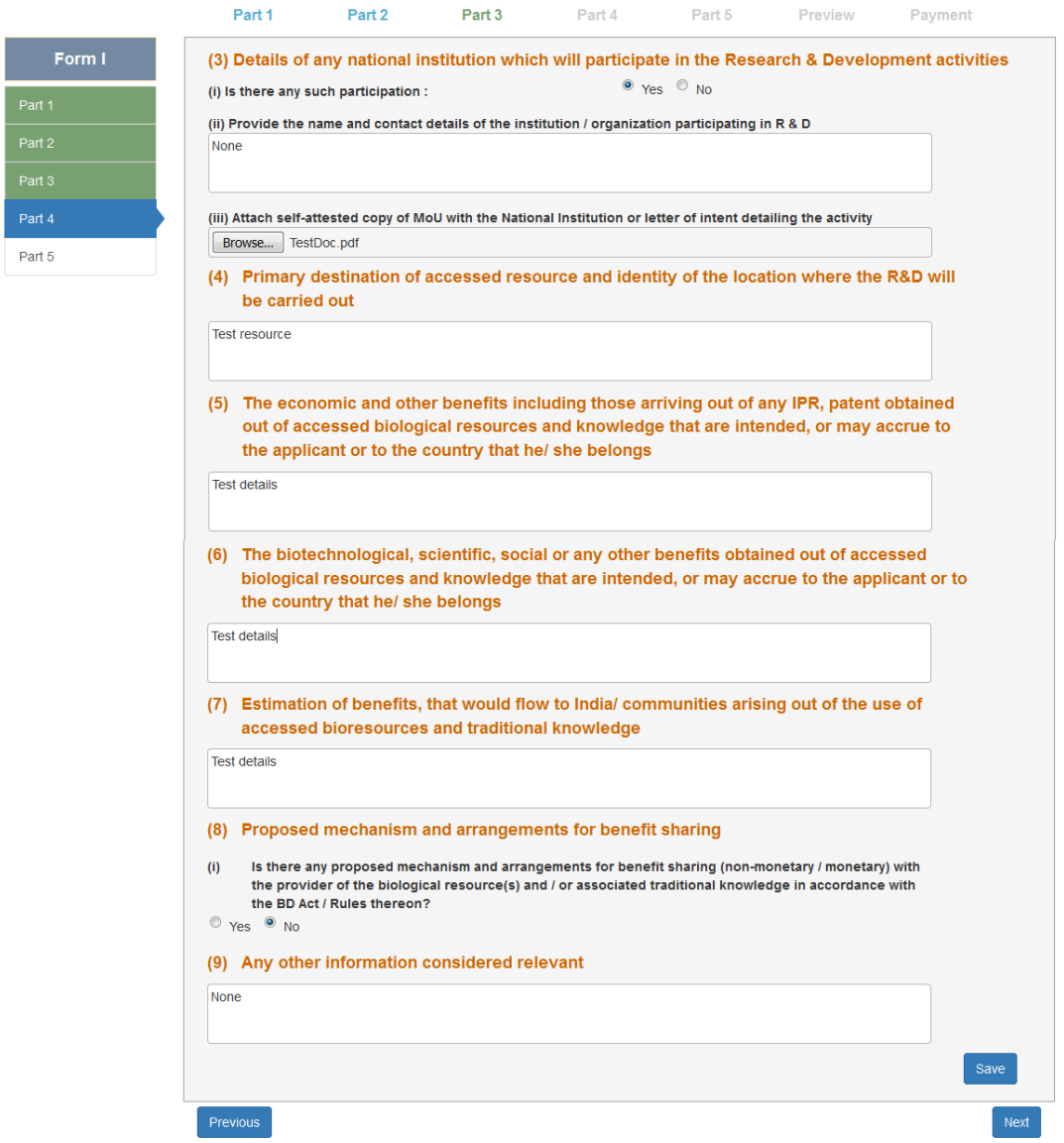

1. Select your declaration option (with or without digital signature). To submit without digital signature, choose "**Declaration without digital signature"**, check the checkbox at the bottom, and click "**Save"** (you can use the "**Preview"** button to preview). Finally, click "**Subm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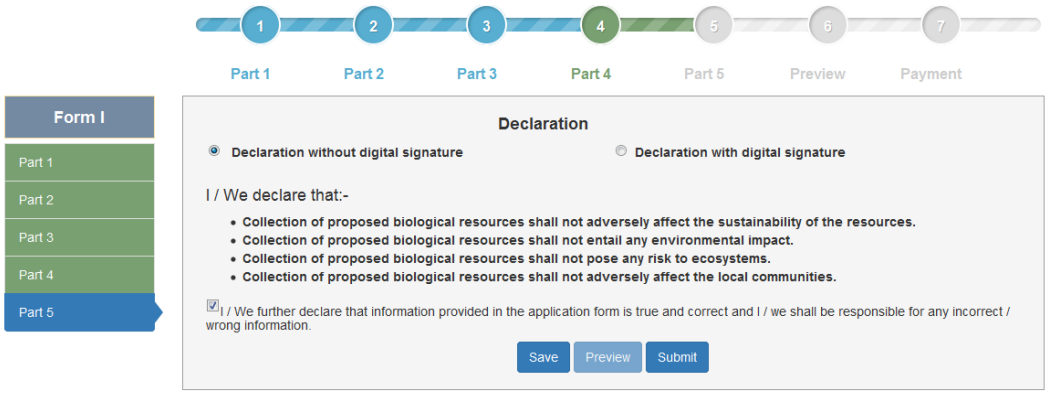

Note: *In the case of using "**Declaration without digital signature"**, the Acknowledgement generated should be duly signed by the applicant and forward it to the NBA for considering the app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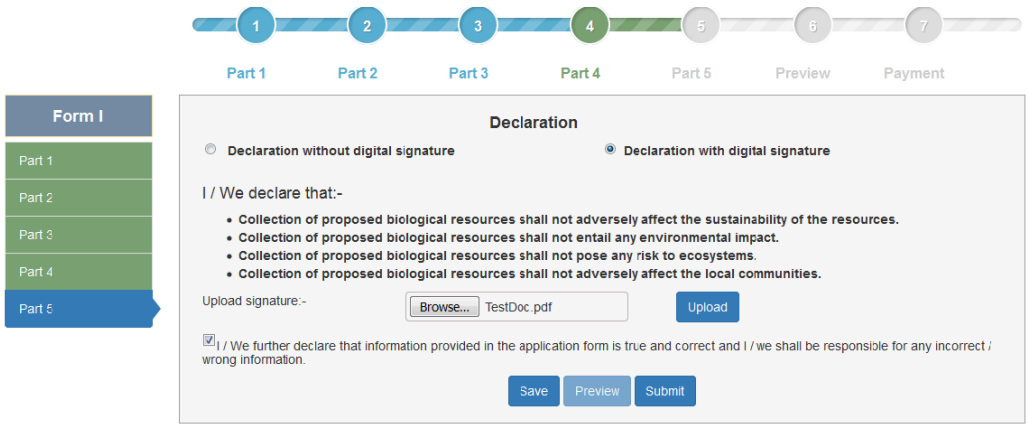

2. If you want to make payment right now, click "**OK"** when the confirmation message appears. Otherwise you can click "**Canc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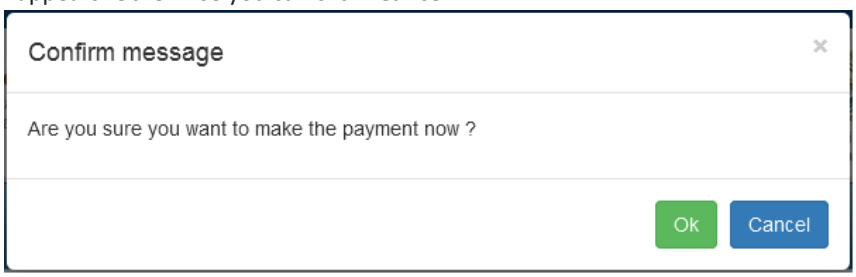

3. To pay online, click the “**Pay Online”** button. Also, enter the payment reference no. , and upload the payment receipt; click “**Save”**. Finally, click “**Confi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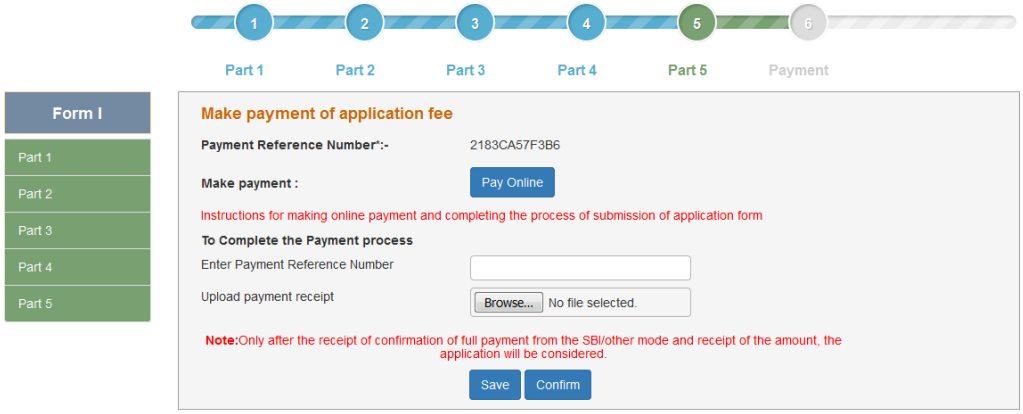

To submit other application forms

You can fill and submit all the Forms (Form II, Form III, and Form IV) in a similar way. For this, select the required form in Step 3 of “**To apply online for NBA approval”**, and proceed in the similar way. Though the required details may vary slightly in different Forms, you can fill the Forms accurately just by reading the on-screen instructions.

To view/edit submitted applications

The **Home** page of the ABS e-filing application displays all the submitted applications. To edit a pending application, click the “**Edit”** icon under **“Action”**. Now (*refer to the steps from Step 5 of “**To apply online for NBA approval”***) you can edit the required details and finally save the changes.

This action button also allows the applicant to download and print the submitted applications.

To view notifications

The “**Notifications”** tab in the **Home** page of the NBA Web Application displays all the notifications. To view notifications:

1. Click the "**Notifications"** tab in the **Home** page of the ABS e-filing application. The list of notifications appears.
2. Click the required notification and view it.

Using the Menu Bar

Users of the NBA Web application use its menu bar:

1. To edit the profile
2. To change the password
3. To logout

To edit the profile

After logging in to the ABS e-filing Application, users can edit their profile from the menu bar. To edit the profile:

1. Click "**Edit Profile"** in the menu bar. The "**Edit Profile"** window app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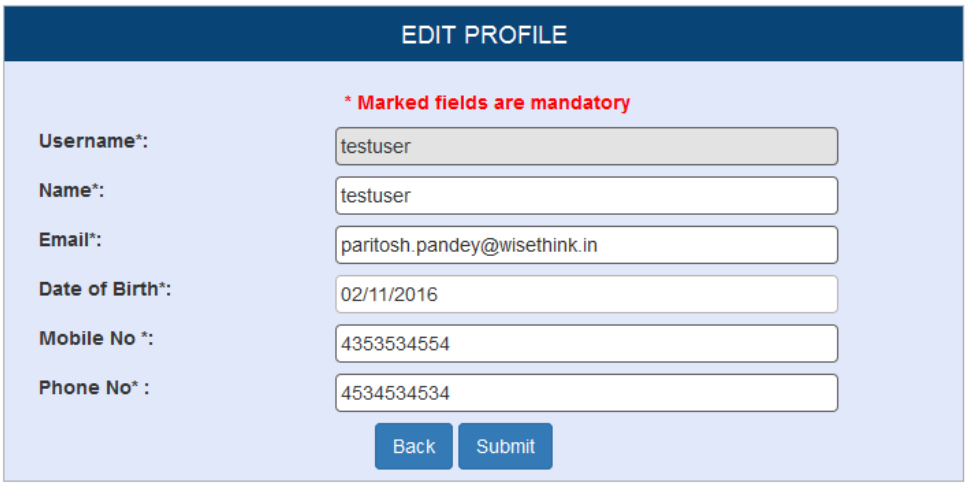

2. Edit the required details and click "**Submit"**.

To change the password

After logging in to the Application, users can change the password from the menu bar. To change the password:

1. Click "**Change Password"** in the menu bar. The **Change Password** window appears.
2. Change the password and click "**Submit"**.

To logout of the ABS e-filing application

Users can logout the NBA Web application from the menu bar. To logout:

- Click "**Logout"** in the menu bar.

Getting additional help

If you need more help in filling up the application or using the NBA Web Application, you can use the live help service from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during the working hour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lick the "**Helpdesk"** icon below the menu bar.

------end------

부록 2 접근 제한/금지 생물자원 (멸종위기종 생물자원 목록)

◆ 인도의 16개 주*와 2개 직할령**은 지역별 멸종위기종을 공표하여 접근을 금지하고 있음

* 16개 주: Bihar, Goa, Himachal Pradesh, Karnataka, Kerala, Madhya Pradesh, Manipur, Meghalaya, Mizoram, Orissa, Punjab, Tamil Nadu

** 2개 직할령: Andaman & Nicobar, Diu & Daman

◆ 다만, 각 주별 생물다양성이사회(SBB)가 다음의 사항으로 승인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 (1) 과학적 연구, (2) 과학적/학문적 기관의 식물표본실이나 박물관, (3) 번식, 및 (4) 기타 과학적 조사

◆ 접근 금지 생물자원 종 수는 아래와 같음

⋯› 세부 목록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https://www.abs.go.kr) 자료실 참조

주/직할령	공표일	접근 금지 생물자원 종 수		
		식물	동물	계
Bihar	2011. 2. 3	1	6	7
Goa	2010. 3.31	2	7	9
Himachal Pradesh	2009. 3.17	8	10	18
Karnataka	2010.10.30	16	16	32
Kerala	2009. 4.15	26	13	39
Madhya Pradesh	2010. 6. 7	3	10	13
Manipur	2012.10.26	5	6	11
Meghalaya	2009. 9.30	6	5	11
Mizoram	2009. 9.30	8	8	16
Orissa	2009. 9.30	1	13	14
Punjab	2014. 2. 4	8	5	13
Tamil Nadu	2011. 3. 1	23	16	39
Tripura	2011. 2. 3	1	2	3
Uttar Pradesh	2009. 4.15	1	0	1
Uttarakhand	2009. 4.15	16	15	31
West Bengal	2010. 3.31	2	17	19
Andaman & Nicobar	2012.10.26	5	8	13
Diu & Daman	2015. 4.29	0	1	1

부록 3 승인 면제 생물자원

◆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의 부속서 I에 수록된 64개 작물**

-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는 2014년 12월 17일 ITPGRFA 부속서 I에 수록되어 다자이익공유체계가 적용되는 작물에 대해서 접근, 지식재산권 취득 및 제3자 이전을 위한 사전승인의 면제대상이라고 공표함

  * ITPGRFA :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식량작물 35종 및 사료작물 29종 등 64종의 작물이 해당

  ⋯› ITPGRFA 부속서 I에 수록된 작물 목록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https://www.abs.go.kr) 자료실 참조

- 단, 이들 작물을 식량농업 외 다른 목적(예: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이용할 경우 생물다양성법이 적용되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생물자원**

- 생물다양성법 40절에 따라 중앙정부가 공지한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생물자원에 대해 사전승인을 요구하지 않음
- 인도 정부는 2016년 4월 7일과 2017년 11월 7일 두차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으로 421개 생물자원 목록을 공표

  ⋯›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생물자원 목록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https://www.abs.go.kr) 자료실 참조

- 421개 생물자원은 곡물류, 콩 종류, 섬유작물, 당료작물, 식용작물, 원예작물, 향신료, 버섯류 등의 항목(Item)으로 구분하여 나열되어 있으며, 각 생물자원의 학명, 사용되는 상품명/일반명, 식물체 부분(식물체 전체, 종자 등), 원천(재배, 야생)등이 표시되어 있음
- 이러한 생물자원이 일반적인 상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사전승인 면제 대상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전승인의 대상이 됨

부록 4 보전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

◆ **ABS 지침은 생물자원 접근과 제3자 이전 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이익공유협약에 선급금을 포함하도록 규정(ABS지침 1(2)조, 3(3)조, 및 12(3)조)**

- 그러나 ABS 지침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음

◆ **현재 ABS 지침의 2019년 개정안이 제안되어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개정안에는 '보존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 목록'(List of biological resources having high conservation and economic value)을 제시**

- 동 목록은 인도의 국립약초이사회(NMPB: National Medicinal Plants Board)와 인도산림연구교육이사회(ICFRE: Indian Council of Forestry Research and Education)가 Goraya(Punjab주의 마을), 일반 지식, 인도종교기구(Ved) 및 인도의 출판사 등의 수요와 공급을 평가한 인도의 약초에 근거
- 해당 목록에는 49종의 식물자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ABS 지침의 개정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2019년 개정안에 포함된 보존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 목록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https://www.abs.go.kr) 자료실 참조

발행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발행일 2019년 8월 16일

기획 안세창, 이제훈, 박찬호, 이상준, 김윤정

집필 정소영, 허인, 김아름

디자인 베이스라인(www.baseline.co.kr)

인쇄 수프린팅

ISBN 978-89-6811-388-8 93360

발간등록번호 11-1480592-001519-01